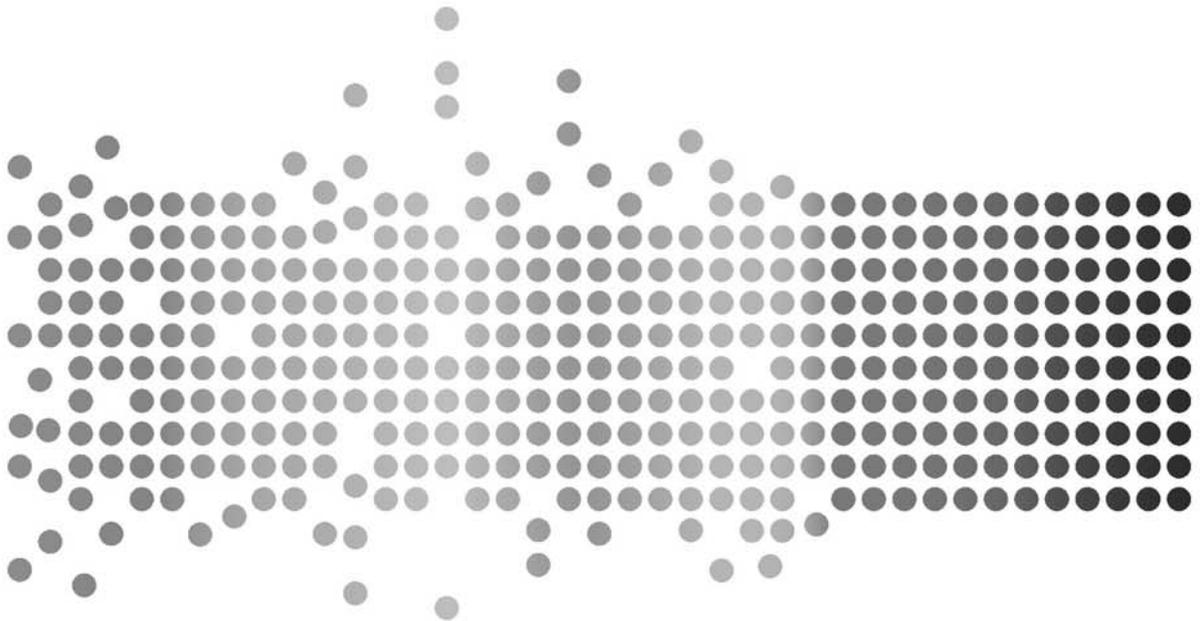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최현수 · 최준영 · 이경진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1.11.11)한 「2012년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머리말

지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 중에서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수준 역시 개편되었다. 이어서, 2011년 3월에는, 2010년 9월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하위 70% 이하 영유아 가구로 추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계속 적용되어왔던 선정기준은 전액지원 확대 및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 상승 및 재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른 2012년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조정안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누리과정의 적용에 의해 당초 예정된 만 5세 무상보육과 함께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3~4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선정기준액 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0년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 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활용하여, 본 연구가 정책 모의분석을 통해 도출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이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추가 확대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선정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연구실 최현수 부연구위원과 최준영 연구원, 이경진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홍석 과장, 김헌주 과장, 본 연구의 수행을 지원해주신 정태길 사무관, 송양수 사무관, 김효정 주무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전반에 대하여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분석 DB 구축 및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강보험공단 김인숙, 이종결 과장, 김경진 선생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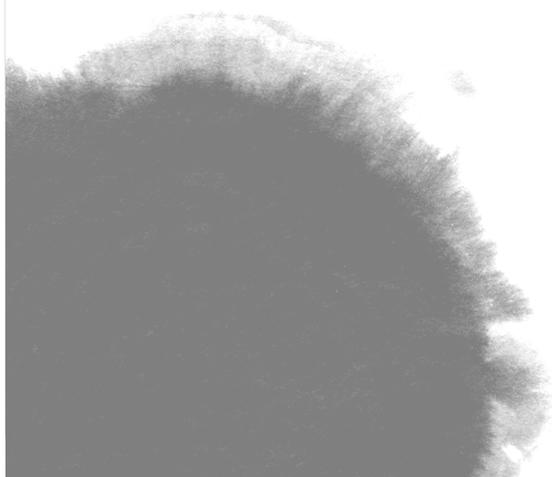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2012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1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21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5
제3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45
제1절 분석 DB 구축: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45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비교	
: 2011년 선정기준 분석 DB vs. 2012년 선정기준 분석 DB ...	50

제4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67
제1절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68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94
제5장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	109
참고문헌	117

1장

서론





제장 서론

제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기존 기초보장수급자(1층)과 차상위계층(2층) 이하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음

–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중 전액지원 대상을 제외한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설정방식 및 지원수준 역시 개편됨

-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3층, 80% 지원), 50~70%(4층, 60% 지원), 70~100%(5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60%(60% 지원), 소득인정액 하위 60~70%(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변경됨

□ 한편, 2010년 9월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따라, 2011년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하위 70%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2009년 7월부터 적용되어 왔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전액지원 확대 및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 상승 및 재산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 개념

: 보육료 지원대상 전체 영유아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보유한 소

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자산조사 범위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가구 균등화지수의 적용에 의해서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부터 높은 계층까지의 분포를 도출한 이후 소득인정액 분위를 결정함

□ 이와 같이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바탕으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검토 및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여부 판단 근거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도출을 위한 기초분석 및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른 2012년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조정방안의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누리과정 적용에 의해 당초 예정된 만 5세 무상보육과 함께 국회 2012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3~4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선정기준액 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2010년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료 지원체계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기대효과

—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활용하여, 정책 모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이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보육료 지원체계 및 양육수당 추가 확대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선정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본계획 및 2009년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제시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향을 살펴봄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및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 2011년 선정기준 분석 DB 상 소득·재산 보유실태 비교 분석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분석
 - 가구유형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분석
 - 경제활동유형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분석
 -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분석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에 따른 전액지원 대상 선정여부 판단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개념 및 모의 분석을 통해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선정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보유 행정자료, 보육료지원 수급통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을 기반으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 구축
 - 분석 DB 구축에서 누락된 주요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보정 여부 및 방식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안 검토
 - 분석대상 영유아 가구 정의 및 범위, 선정기준 도출 근거가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결정 필요

- 2009년 7월 추진된 바 있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당시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영유아 가구 DB 구축 및 분석
- 다양한 정책 모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잠정 조정방안 도출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향후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선 필요사항 제시

-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소득인정액 개념에 포함될 소득 및 재산항목별 평가범위 및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재산가액 산정기준, 기초공제액, 자동차 배기량 기준 등) 등에 있어 제기되는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각 장별 연구내용의 구성

- 제2장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관련 중장기 계획과 그 동안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조정방향을 검토함
 - 보육정책 기본계획(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상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함
 - 2009년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향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 및 선정기준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영유아 가구 분석 DB 구축 과정 및 주요 변수 등을 제시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편 모의분석 판

- 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에 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2011년 선정기준 도출 당시 분석 DB와 비교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실시하여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제시함
 - 먼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 5세 무상보육 및 0~2세 무상보육 확대를 반영한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해 연령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함
 -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 2009년 7월 확대 개편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인 보장단위,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을 수준,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하여,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과정에서의 한계, 지역 및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불균형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향후 확대 예정인 양육수당 선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보육료 지원 정책현황 분석
 -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현지조사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및 유사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선정체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 조사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회의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육료지원 신청 영유아가구, 보육시

설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FGI 실시

- 보육료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기준 조정방안 및 향후 양육수당 선정체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심층 통계분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조정을 위한 모의 분석틀 (policy simulation frame) 및 DB 구축

- 소득인정액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 등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에 필요한 요소 확정
-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 정보 인프라 개편 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모의 분석을 위한 프레임 및 DB 구축방안(layout) 마련
- 추출원칙 및 대상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 DB 추출시점까지 출생한 전체 영유아 정보를 기준으로, 행망 주민등록정보로부터 영유아가 포함된 전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추출하여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를 해당 시점 기준으로 추출하여 병합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공적자료 활용지침을 반영하여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정확성 제고 및 보정방안 검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되어 있는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통계 추출 및 적용을 통한 보정방안 검토

－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원자료(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영유아 가구 분석 DB를 활용하여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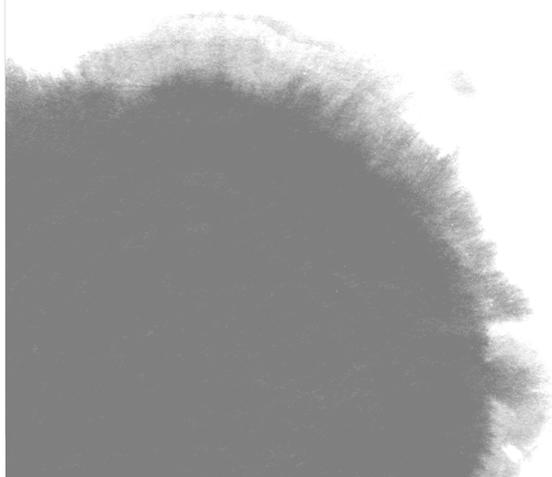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통계 생산 및 비교 검토

-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분석모형에 따른 정책 모의분석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 분석 및 선정기준 조정방안 제시



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1 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1. 새싹플랜 (2006~2010년)

□ 수립배경

- 2006년 수립된 바 있는 1차 중장기 보육정책 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년)은 현재 민간 위주로 보육서비스가 민간에 집중되어 있고,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차등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하고자 함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2010년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80.8%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약 1,008천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함
- 그러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여전히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님

2. 아이사랑플랜 (2009~2012년)

□ 수립배경

-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고자 하여 앞에 제시한 1차 중 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 2009년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함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추진방안

-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함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09년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2012년 소득 하위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함

구분	보육료지원 확대 관련 「아이사랑플랜」 계획(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계층	소득 하위 50% 이하	소득 하위 60% 이하	소득 하위 70% 이하	소득 하위 80% 이하
지원대상자 (추정치)	61만명	82만명	99만명	111만명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관련 기존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의 차이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육비용 부담완화
 - 새싹플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였으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아이사랑플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서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분포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 이하 영유아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로 만 0~4세 영유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를 대상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 7월 이전 만 0~4세 영유아 가구의 경우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을 차등 지원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을 통해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까지 확대하였음
 - 부분지원 대상 영유아 가구의 선정기준 역시 소득인정액 하위 50~60%(보육료 60% 지원), 하위 60~70%(보육료 30% 지원)로 확대하였음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년)

□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보육료 지원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0~4세 차등보육료 지원(1991년), 만5세아 무상보육(1999년), 두자

녀 이상 보육료 지원(2005년),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강화(2010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에 이어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011년까지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짐
-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가구를 위주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였던 것에서 2011년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맞벌이가구의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을 가짐

구분	보육료지원 확대 관련 주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차등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 소득인정액 하위 70%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하위 50% 확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부부합산소득 25%차감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1. 보육료 지원대상 개편(2009년 7월) 이전 선정체계

□ 기본구조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산조사를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선정방식)을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비교

□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구분 및 차등보육료 지원수준

- 기존의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지원계층은 5층의 계단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원계층의 경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각각 설정하였음
- 전액지원(100%)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영유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영유아 등 법정 지원대상(1층)과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2층)을 그 대상으로 함
- 부분지원 80%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상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이하(3층)를 그 대상으로 함
- 부분지원 60%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70%이하(4층)를 그 대상으로 함
- 부분지원 30%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 70~100%이하(5층)를 그 대상으로 함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기존의 가구규모에 따른 계층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었으며, 1층과 2층은 최저생계비, 3~5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을 도출 및 적용하였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 기존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었음

□ 가구규모 및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2008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4인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대상인 1~2층, 즉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선정기준은 151만원이었음
 - 3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선정기준은 199만원, 4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선정기준은 278만원, 5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상)의 선정기준은 398만원이었음

지원대상	지원계층 구분	지원비율	2008년 선정기준 (단위: 만원)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액 (100%)	-	-	-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57	398	420	460

2. 보육료 지원대상 1차 확대 개편(2009년 7월) 이후 선정체계

□ 기존 보육료 선정기준의 한계점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을 혼용하였다는 점에서 정합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산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어렵고, 전체 조사표본 가운데 영유아가구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영유아가구의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대상의 선정기준액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선정기준액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어 해당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어려움
- 전체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의 분위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구 전체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가 구축된 DB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통한 선정기준의 도출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괴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짐
- 그러므로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선 및 재정립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음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된 무상보육(전액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 가구에 대

한 개념을 정립하고, 선정기준액 도출방식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상보육(전액지원) 뿐만 아니라 부분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한 선정기준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전체 영유아가구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구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항목별 원자료를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DB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항목에서 일부 누락된 항목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전체 영유아가구의 DB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를 활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기존 보육료 선정방식의 한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되고 있었음
- 그러나 보육료 지원제도는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제도의 지원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지원제도의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각종 민원과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
- 본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조사는 이미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산자료의 미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일부소득 및 재산항목,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보육료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의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졌음에도 그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방식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가장 선별적이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선정방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였음

- 특히 보육료 신청에 있어 신청기구에서 제출 및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았고, 확인조사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일선 지자체 보육관련 업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신청기간에 일시적인 민원과 확인조사의 집중으로 자산조사 관련 업무 부담을 초래하였음
- 이 같은 문제점은 자산조사방식과 관련된 원칙 또는 지침과 이를 적용하는 일선 지자체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서 기인한 선정방식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보편성을 강조하는 보육료 지원제도로의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 선정방식이 지닌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그러므로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자산조사 방식 가운데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제외,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과 관련된 환산율은 현행 1/3만 반영하고 있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다 완화해야 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의 주요내용

- 2009년 7월 이후(1차 개편), 전체 영유아기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차등보육료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규모 및 분위별 선정기준액을 도출하였음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선정기준 및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별 선정기준액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음

-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행정자료를 기초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의 선정기준 258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50~60%의 선정기준은 339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60~70%의 선정기준은 43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9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09년 7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이하	부분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이하	부분 (30%)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의 주요내용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체계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의미하는 보장단위와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포함여부, 조사원칙 및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였음
- 주요 개편사항은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조회 실시,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재산유형 분류기준 완화,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등이었음
 -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원 범위)는 조부모 동거사실의 확인불가

에 따른 편법이 성행하며,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기 위해 기존에 영유아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서 영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로 변경함

- 소득 및 재산조사 원칙 및 조사방법은 소득증명서류 제출 없이 공적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수행과 복수의 행정자료 존재시 적용 우선순위 사전 설정으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보수월액→국세청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활용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의 경우, 실질적인 확인이 곤란한 점, 전업주부 등 추정소득에 대한 각종민원 발생, 그리고 정확한 추정소득 계산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함
- 자동차의 일반재산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를 경계로 적용되는 소득환산을 관련 각종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의 정책취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완화하고, 3차녀 이상의 가구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동산 재산가액 산정방식은 재산가액 평가기준 및 확인절차 간 소화를 위해 기존 시가 파악 후 적용하였던 것에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결과의 반영으로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를 실시하기로 함

3. 보육료 지원대상 2차 확대 개편(2011년 3월) 이후 선정체계

□ 2011년 3월 이후(2차 개편) 주요 확대 내용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보육

료 지원체계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보편적 제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위상을 제고하였음

- 그러나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므로 2011년 3월 이후에는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됨
-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만 0~4세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 적용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또한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0~2세의 모든 영유아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보육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11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11년 3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16	480	537	588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2011년 3월 이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서는 보육 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그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 가구규모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이에 2010년에는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3월 이후 이를 더 확대하여 부부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를 지원 하는 것으로 조정됨

4. 보육료 지원대상 3차 확대 개편(2012년 3월) 이후 선정체계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 중에서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수준 역시 개편됨(1차 확대 개편)
- 이어, 2011년 3월에는, 2010년 9월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하위 70% 이하 영유아 가구로 추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계속 적용되어왔던 선정기준은 전액지원 확대 및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 상승 및 재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한 바 있음(2차 확대 개편)
- 또한, 2012년 누리과정의 적용에 의해 당초 예정된 만 5세 무상보육과 함께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이 만 0~2세, 만5세 영유아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그 외 만3~4세 영유아 가구는 2011년 3월부터 적용된 선정기준과 소득 하위 70% 이하로 조정되었음(3차 확대 개편)
 - 이에 2012년 누리과정 적용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개편과 2012년 국회 예산안 처리 전후의 확대 과정을 간략히 제시함

가. 국회예산안 처리 전

- 국회예산안 처리 이전까지는, 만 5세 영유아 가구에 한해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서 만 5세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 이에 따라, 만 5세 영유아 가구를 제외한 만 0~4세 영유아가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이후와 동일하게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로 유지하며, 2011년 선정기준 480만원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아래의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었음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국회예산안 처리 전 (잠정 조정안)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만 5세		전액 (100%)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만 0~4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50	520	581	637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나. 국회예산안 처리 후

- 국회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만 5세아 영유아가구 뿐 아니라 만 0~2세아 영유아 가구에게도 보육료 전액지원 (무상보육)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만 0~2세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2013년에는 3~4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양육수당을 영유아 가구의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가구를 제외한 만 3~4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이후와 동일하게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적용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4인 가구 524만원)하여 적용하도록 함

선정기준 구분		지원비율	2012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국회예산안 처리 후 (2012년 3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만 0~2세 / 만 5세		전액 (100%)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및 만 0~2세까지 무상보육 확대 실시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만 3~4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54	524	586	642

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2009년 7월 이전)

- 기존 보육료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1층, 차상위계층(2층)에 보육료 전액지원을 하였으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이하(3층)가구, 50~70%(4층)가구, 70~100%(5층) 가구에 보육료 부분지원으로 각각 80%, 60%, 30%를 지원하였음

□ 2009년 7월 이후(1차 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 지원수준은 기존에 '100%-100%-80%-60%-30%(5층구조)'에서 2009년 7월 이후 '100%-60%-30%(3층구조)'로 조정되었음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

이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았음

-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에 차상위계층 (약 159만원)에서 소득인정액 50%의 25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이는 선정방식의 개편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정기준의 확대는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3층과 4층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액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전액지원 뿐만 아니라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역시 크게 상향 조정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4층에 해당하는 60% 지원계층의 경우, 213~298만원에서 258~339만원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상한선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5층에 해당하는 30% 지원계층 선정기준은 298~427만원에서 339~436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2011년 3월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동

-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은 5층(기존)에서 3층(1차 확대 개편), 그리고 2011년 3월 이후(2차 확대 개편)부터는 차등보육료가 아니라 단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전액지원 대상을 선정함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0년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2012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확대 개편

- 연말 국회예산안 처리 전
 -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영유아 가구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만 0~4세 영유아가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이후와 동일하게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로 유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3월부터 2011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음
- 연말 국회예산안 처리 후

- 연말 국회예산안 처리 후, 2012년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만 5세 영유아 가구와 만 0~2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도 보육료 전액지원을 확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가구를 제외한 만 3~4세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1년 3월 이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까지 유지하게 되었으며, 만 3~4세 영유아 가구 대상으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추이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2009년 7월 이전)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2009년 개편 전 (2009년 7월 이전)	정부 지원				부모부담
	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159 (100%)	213 (80%)	298 (60%)	427 (30%)	

– 2009년 7월(1차 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2009년 1차 개편 (2009년 7월 이후)	정부 지원			부모부담
	1~3층 (100%)	4층 (60%)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258 (100%)	339 (60%)	436 (30%)	

– 2011년 3월(2차 개편)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개편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2011년 2차 개편 (2011년 3월 이후)	정부 지원 (100%)			부모부담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480 (100%)			

— 2012년 3차 개편(안): 국회예산안 처리 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만 5세	2012년 3차개편안 (국회예산안 처리 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 (100%)	
		만 0~4세 영유아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 지원 (100%)	부모 부담
만 0~4세	2012년 3차개편안 (국회예산안 처리 전)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자활수준)	520 (100%)

— 2012년 3월(3차 개편): 국회예산안 처리 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만 5세	2012년 3차개편 (국회예산안 처리 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만 0~2세 영유아가구 전체로 무상보육 확대 정부 지원 (100%)	
		만 3~4세 영유아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 지원 (100%)	부모 부담
만 3~4세	2012년 3차개편 (국회예산안 처리 후)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자활수준)	524 (100%)

6. 2013년 이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계획

가. 정부 발표

□ 보육료 지원 확대

- 현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에서 시작하여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
 - 2012년에는 소득인정액에 상관없이 만 5세와 만 0~2세 영유아 가구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함
- 유아교육·보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한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지원이 확대되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됨

□ 양육수당 확대

- 양육수당도 2009년 도입 후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금액을 확대해왔음
- 향후,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구분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1단계 (~2011년)	- 지원대상 지속적 확대	- 2009년 7월 양육수당 도입 -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2단계 (2012년)	- 5세 누리과정 및 0~2세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확대	- 장애아동에 대해 취학전(84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3단계 (2013년)	- 3~4세 누리과정 도입	-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소득인정액 하위 70%)

자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일자)

나. 4.11 총선 공약

□ 보육료 지원 확대

- (새누리당) 만 3~5세의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및 2013년부터 만3~4세아 영유아가구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민주통합당)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며, 이는 표준보육비용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 양육수당 확대

- (새누리당) 2013년부터 만 0~5세아 영유아가구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10~20만원)
- (민주통합당) 만 0~5세 전체 영유아가구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5세 10만원으로 양육수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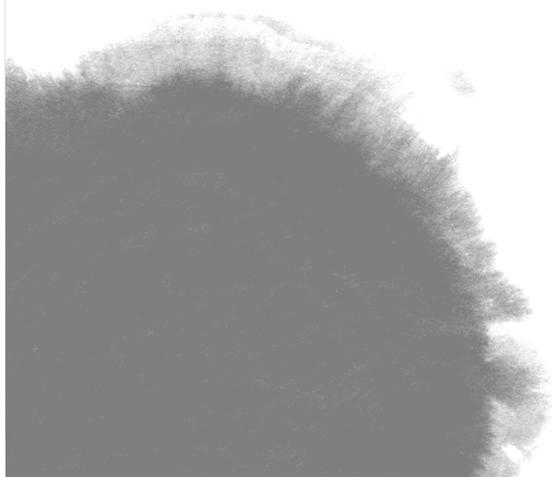
구분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새누리당	- 2013년부터 만 3~4세 전체 영유아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 2013년부터 만 0~5세 모든 계층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 (10~20만원)
민주통합당	- 만 0~5세 전체 영유아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표준보육비용 지원	- 만 0~5세 전체 영유아가구 ¹⁾ · 만0세: 20만원 · 만1세: 15만원 · 만2~5세: 10만원

주: 1)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시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재검토 예정인 자료: 새누리당 총선공약자료, 민주통합당 총선공약자료



3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제3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제1절 분석 DB 구축: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 분석목적

-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의 영유아가 1인 이상 있는 전 가구의 가구원 정보를 추출하고, 영유아의 부모를 중심으로 해당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2012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

□ 분석자료 추출: 건강보험 보유 공적 행정자료

- 2011. 11월말(자료추출 시점) 현재를 기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DB 중에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인 ‘0~5세 영유아(’06.1.1 ~ ’11.11.11 출생)’ 2,705,901명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정보 기준으로 전 가구원을 추출하여 DB 구축
 - 세대주 기준 2,105,242세대, 8,095,225명 (영유아 2,705,901명)
 - 세대를 구성한 모든 가구원 개인별 소득재산 정보 원자료 추출
- 구축된 DB 내에서 추출 가능한 방법(☞ 행망 세대주와의 관계 기준)으로 선정 시 자산조사 대상(보장단위)인 ‘영유아, 부모, 영유아

이외 자녀' 로 구성된 DB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

– 추출 가능한 '영유아-부모' 관계

- 2,705,901명 중 2,676,654명 (98.92%)
- 05(자) - '01(세대주) & 02(처)' or '01(세대주) & 07(남편)'
: 2,462,701명 (91.01%)
- 40(손) - '05(자) & 06(자부)' : 170,746명 (6.31%)
- 76(외손) - '05(자) & 08(사위)' : 43,207명 (1.60%)
- 추출 제외된 영유아: 조카(14,577명) & '친척/동거인(8,946명) 등

□ 영유아 & 부모 기준 DB 변환

– 가구 ID 기준 최초 변환된 영유아 & 부모 DB로부터 영유아 1인
만으로 구성된 가구, 영유아 4인 이상인 가구(아동시설 추정) 등
을 제외하고 영유아 & 부모 기준 가구규모를 2~7인으로 제한하
여 분석 DB 구축

- 영유아 1인 단독가구 제외: 데이터 추출 오류 또는 세대 분리
후 타 가구 편입 사례 추정

– 세대주 없는 가구 및 세대주 확인 시 2인으로 확인된 가구 제외

- 데이터 추출 시 오류(행정전산망의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또는
특수한 형태 세대합가 가구 추정

– 세대주 연령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세대주 가구 제외

- 소년소녀가장 세대 또는 행정전산망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추정

–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출 시 지역별 기초공제액 반영에 필요한 시
도(행정구역) 코드가 누락된 가구 제외

□ 전체 영유아 가구 DB: 2,022,390가구 (영유아 2,596,427명)

– 최초 추출 전체 영유아 2,705,901명 중 95.95%

– 영유아 & 부모 DB 구축대상 영유아 2,676,654명 중 97.00%

□ 최종 분석 DB: 3~4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 3~4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 891,756가구

－ 3~4세 영유아 : 922,847명

• 3세(2008년생) : 447,969명 / 4세(2007년생) : 474,878명

□ 분석 DB 구축 시 포함된 소득 및 재산항목 관련 주요 변수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항목과 분석 DB에 구축된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재산항목별 기준시점 및 특성은 다음과 같음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시점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원/연간)	국세청	'10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임대소득 (종합소득자)	임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원/연간)	각 연금공단	'11.11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보수월액(원/월)	건강보험공단	'11.11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			
재산	일반재산(건축물)	건물(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11.6	과세표준액 ÷ 0.7=시가표준액
	일반재산(주택)	주택(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0.6=시가표준액
	일반재산(토지)	토지(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0.7=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자동차	자동차 연간세액 (원/연간)			자동차 자료건수
		자동차 자료건수			
	전월세보증금	-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 채	-			

□ 건강보험공단이 연계 및 보유하고 있는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일부 누락 항목을 제외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분석 DB 원자료 활용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월액 =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환산율 } + 자동차 연간세액] ÷ 12
 - 시가표준액 환산 : 과세표준액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비율 기준 역산
 - 주택 : 지방세법 상 2010년 재산항목별 과세표준 적용비율 60% 기준 (과세표준액 ÷ 0.6)
 - 토지 및 건축물 : 지방세법 상 2010년 재산항목별 과세표준 적용비율 70% 기준 (과세표준액 ÷ 0.7)
 - 선박/항공기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구축된 영유아 가구 분석 DB 한계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2010년부터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소득인정액 산출) 시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과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누락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정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은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1) 자동차가액에 환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해야 하나, 자동차가액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연간 자동차세액 자료를 대리변수로 사용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비교 : 2011년 vs. 2012년 선정기준 분석 DB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영유아 & 부모 DB를 기초로 보육료 지원대상인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함
-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기초분석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조정안 도출을 위한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자동차 연간세액 / 2)

- 2011년 vs.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분석 DB 기준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비교
- 먼저, 2012년 선정기준 도출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상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범위)인 영유아 및 부모 중심으로 구축했던 분석 DB를 바탕으로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와 평균을 분석함
 - 특히, 2011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개편을 위하여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당시 분석했던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와의 비교를 통해서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분석 DB 상의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를 제시함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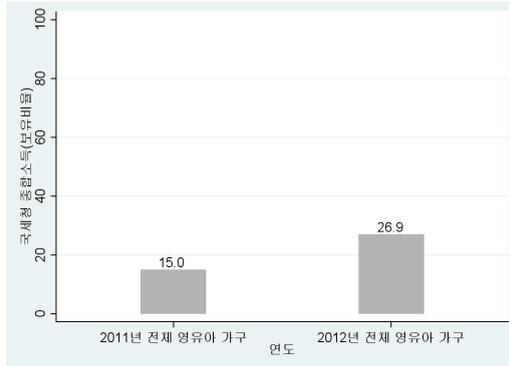
구분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 평가액
2011년 전체 영유아 가구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15	0.027	2,477	2,692
	보유비율 (단위: %)	15.0	0.034	67.0	74.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433	80	3,697	3,599
2012년 전체 영유아 가구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86	0.027	2,651	2,937
	보유비율 (단위: %)	26.9	0.034	68.8	80.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063	81	3,853	3,639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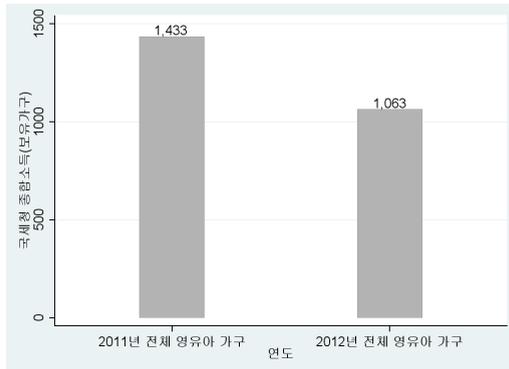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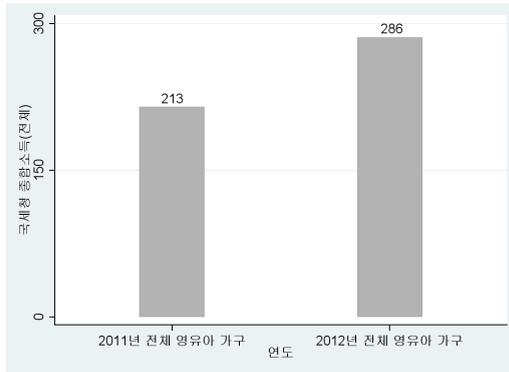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연 16.68%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1년 전체 영유아 가구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8,108	18,914	4,702	101,739	79,961	1,155
	보유비율 (단위: %)	48.9	16.9	5.2	55.0	47.0	86.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9,730	111,917	90,423	184,980	170,130	1,331
2012년 전체 영유아 가구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9,952	18,507	4,956	103,415	81,663	1,274
	보유비율 (단위: %)	48.8	16.6	5.2	54.7	47.6	81.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3,836	111,488	95,308	189,059	171,561	1,573

－ 국세청 종합소득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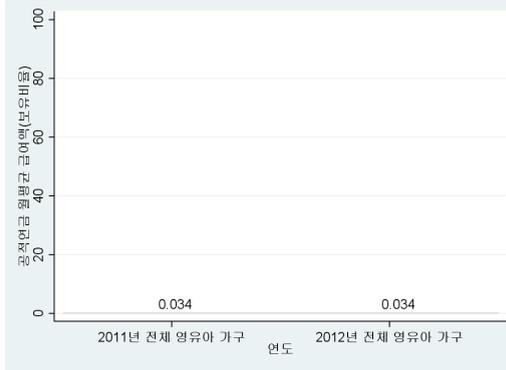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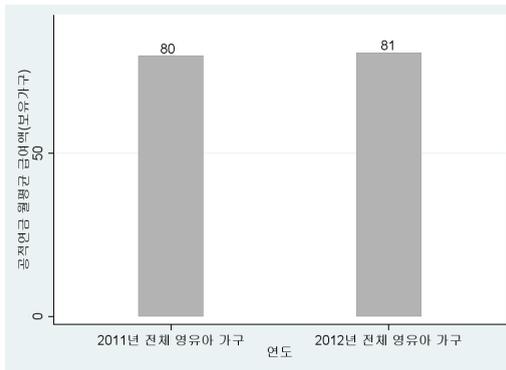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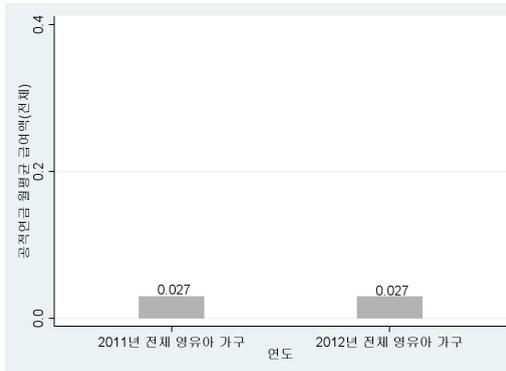


— 공적연금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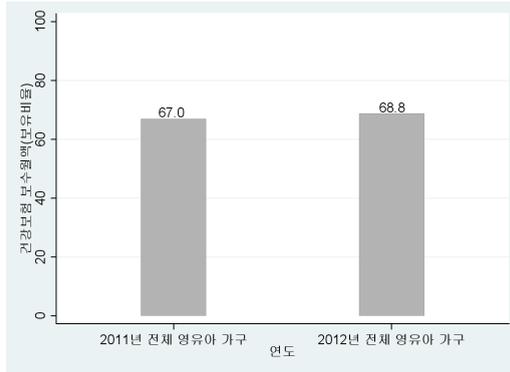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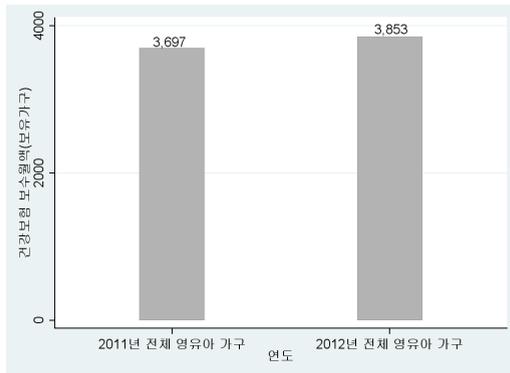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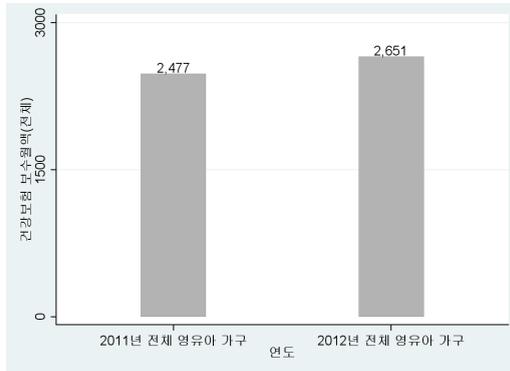


— 건강보험보수월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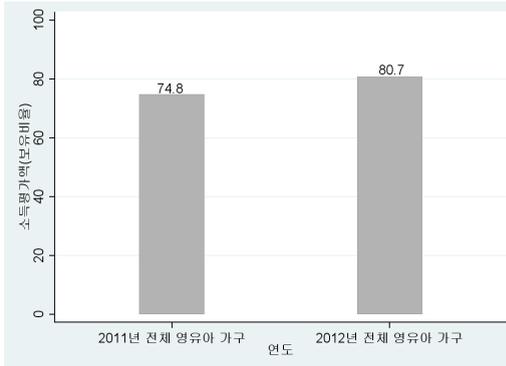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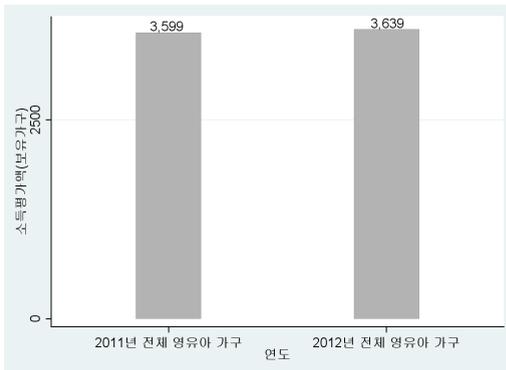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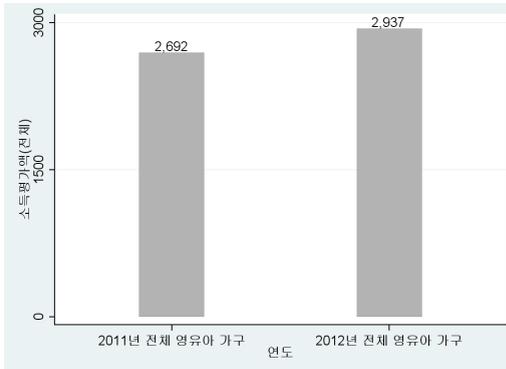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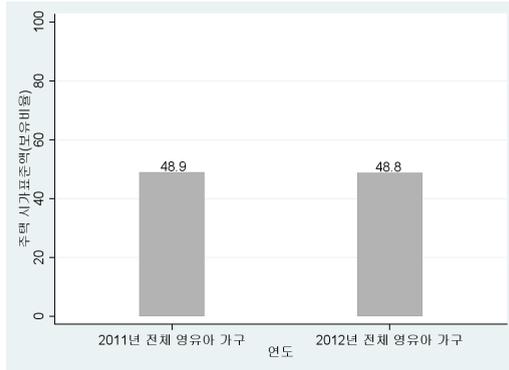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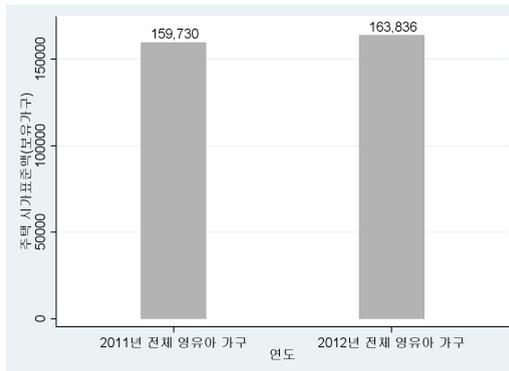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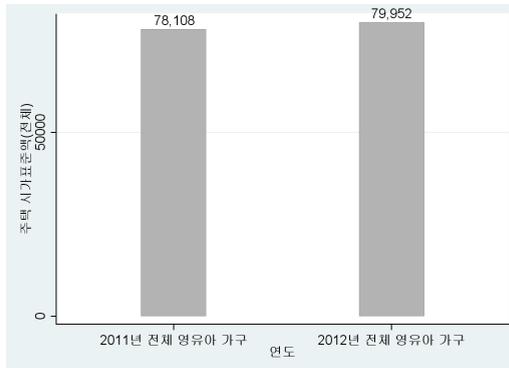


－ 주택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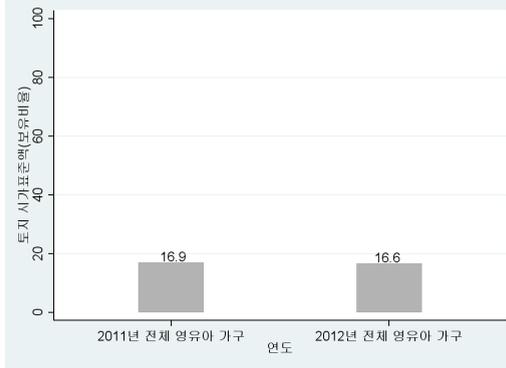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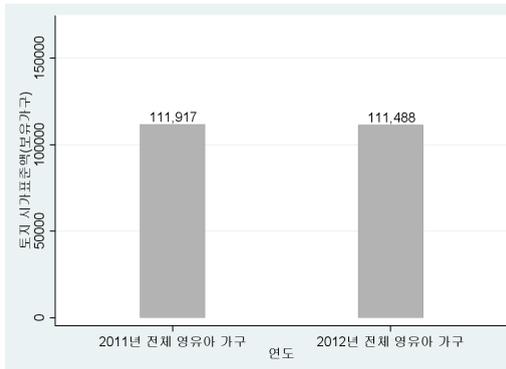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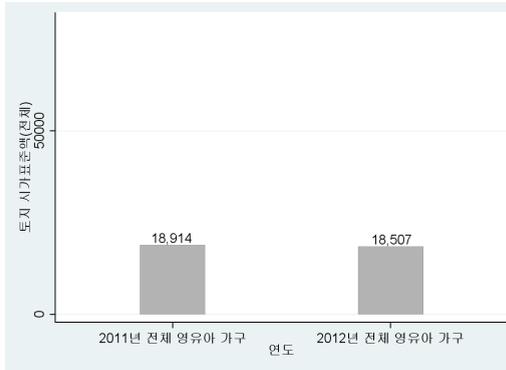


－ 토지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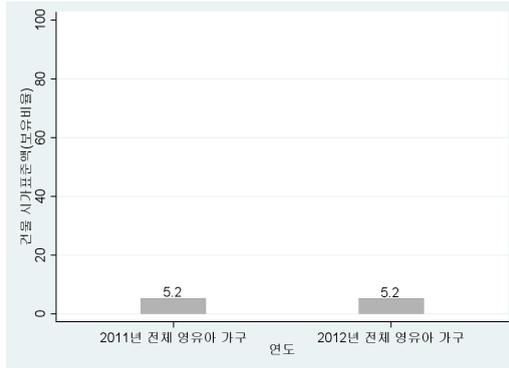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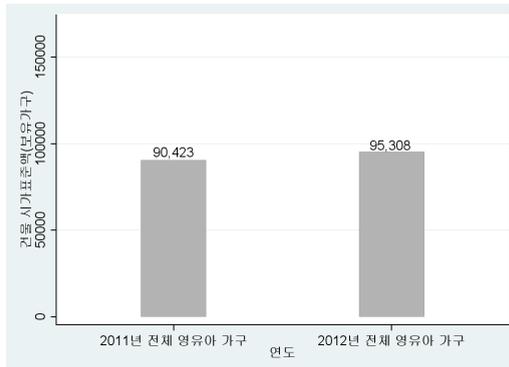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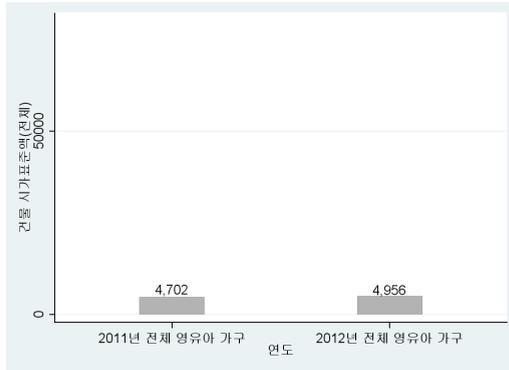


－ 건물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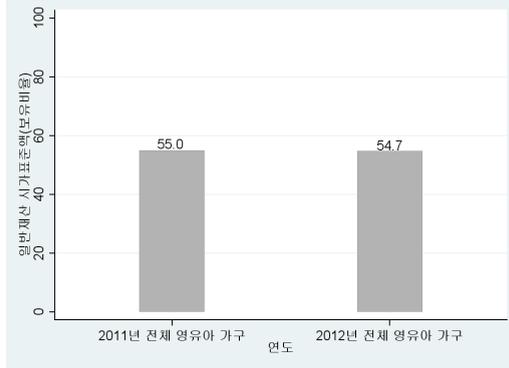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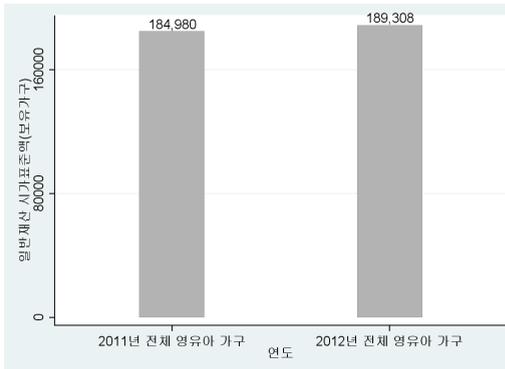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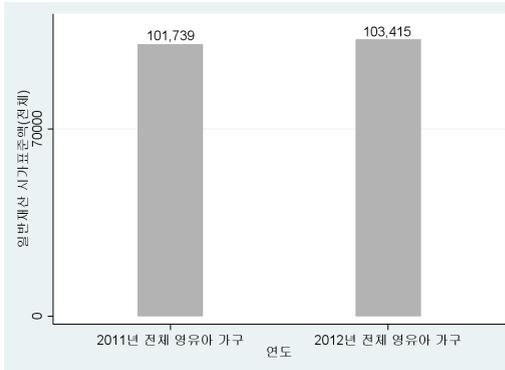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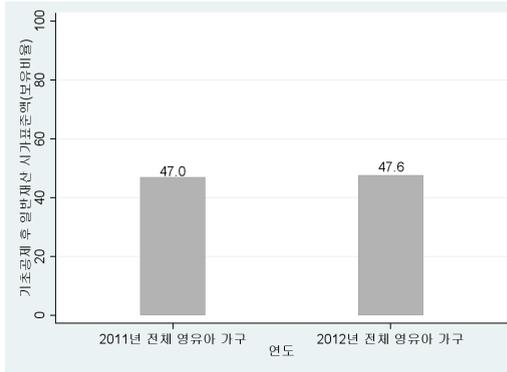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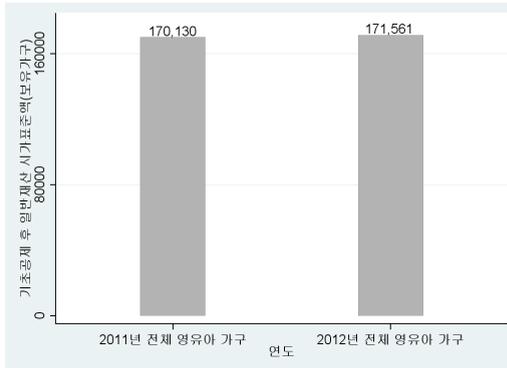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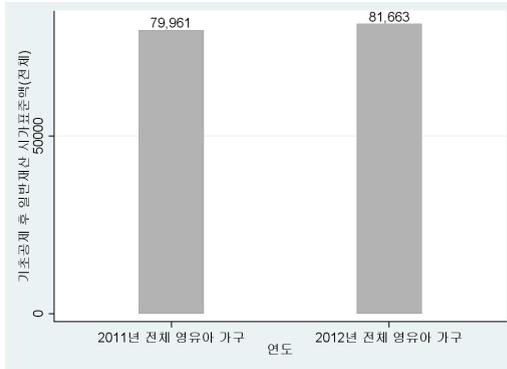


－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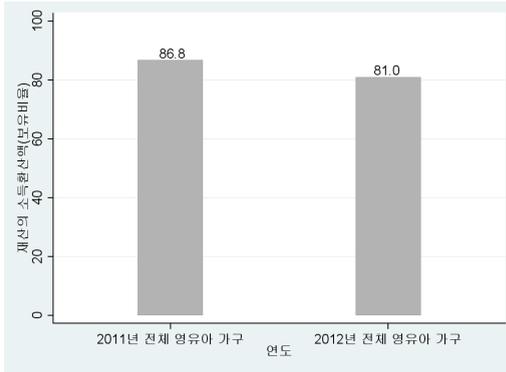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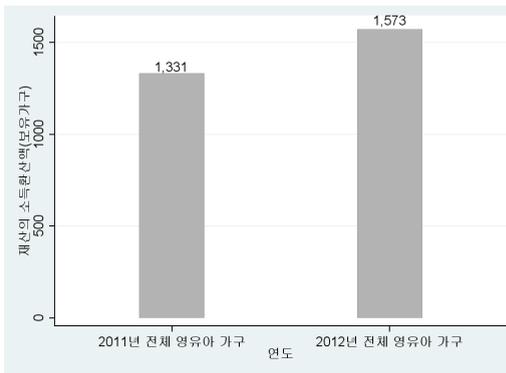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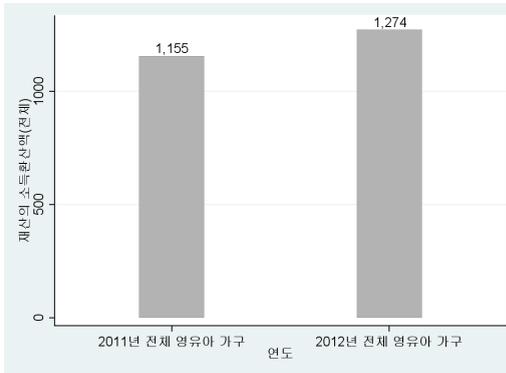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비율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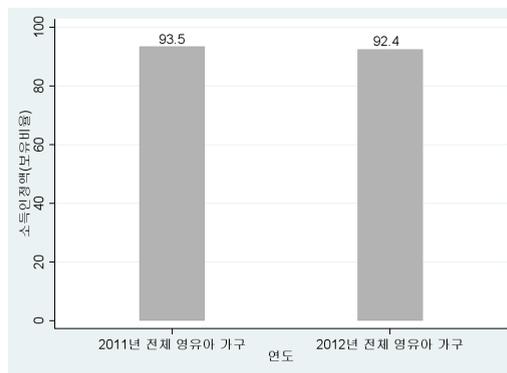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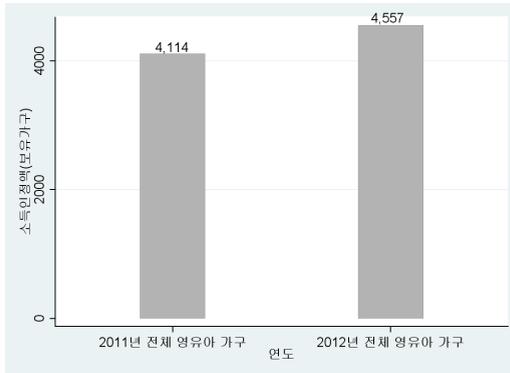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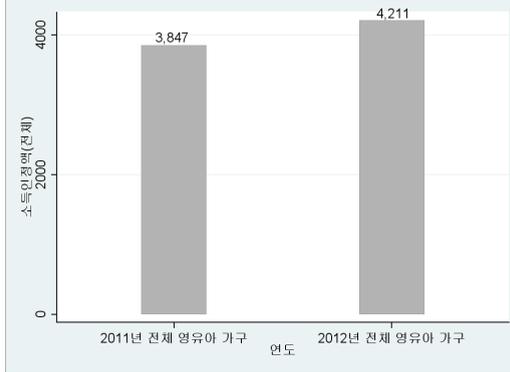
구분		소득평가액	연 16.68%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연 16.68% 기준 소득인정액
2011년 전체 영유아 가구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692	1,155	3,847
	보유비율 (단위: %)	74.8	86.8	93.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599	1,331	4,114
2012년 전체 영유아 가구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937	1,274	4,211
	보유비율 (단위: %)	80.7	81.0	92.4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639	1,573	4,557

— 소득인정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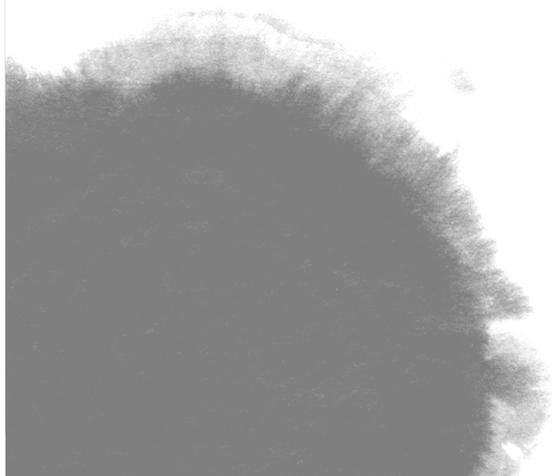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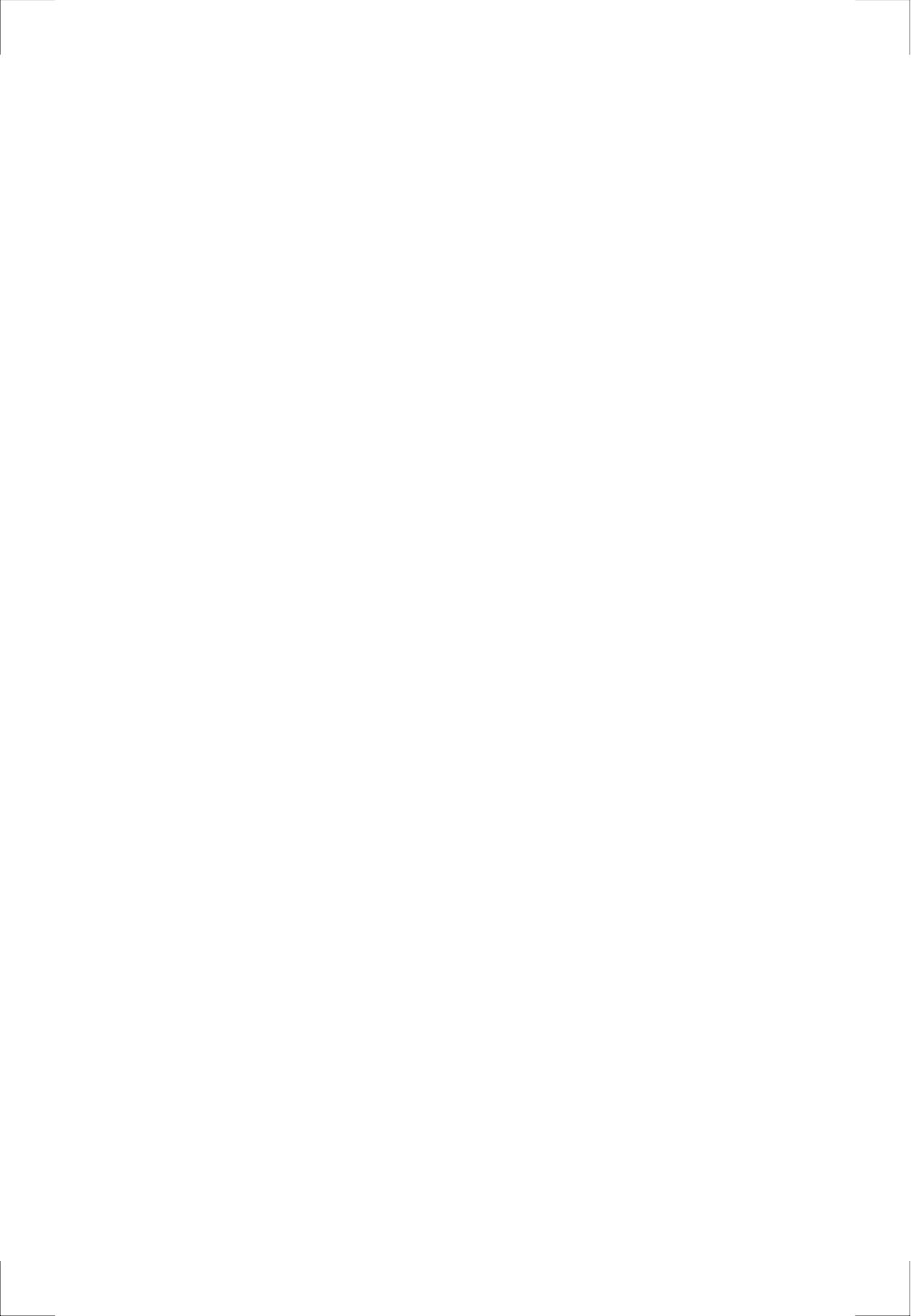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4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4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 제4장에서는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
 - 먼저,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른 만 5세 무상보육 및 0~2세 무상보육 확대를 반영한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해서 연령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분석함
 -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는, 2009년 7월 확대 개편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쟁점사항인 보장단위(자산조사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준, 각종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 및 분석함으로써,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다양하게 도출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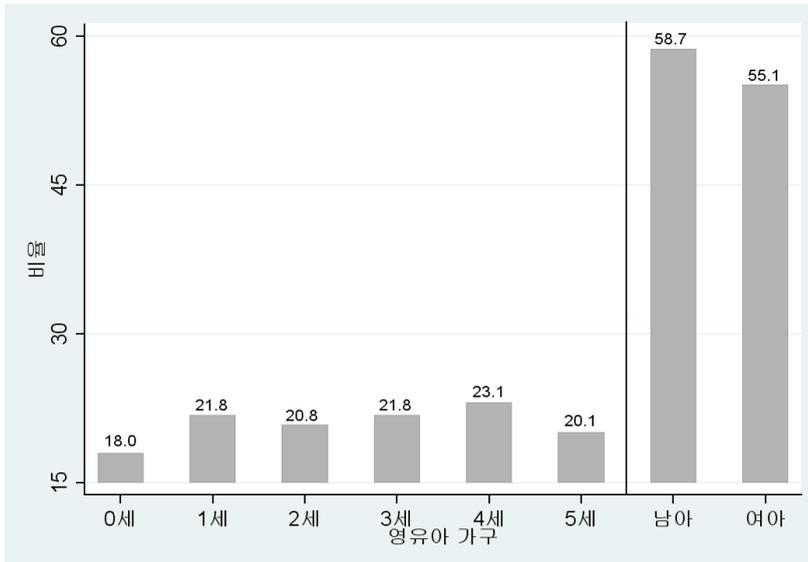
제1 절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1.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 영유아 연령 및 성별 가구 분포

- 각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해당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분포를 살펴봄
 - 전체 분석대상 영유아 가구는 2,022,390가구이며, 개별 영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해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함

구분	전체	0세 영유아 가구	1세 영유아 가구	2세 영유아 가구	3세 영유아 가구	4세 영유아 가구	5세 영유아 가구	남아 영유아 가구	여아 영유아 가구
비율	100.0	18.0	21.8	20.8	21.8	23.1	20.1	58.7	55.1
가구	2,022,390	363,356	441,789	420,351	441,797	468,348	426,122	1,186,757	1,114,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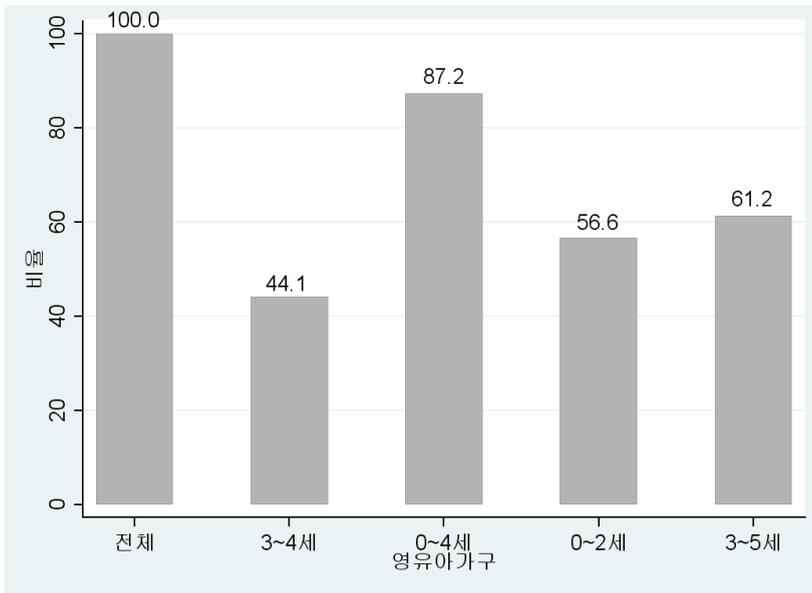
주: 해당 연령 및 성별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중복으로 나타나므로 합계는 100% 초과함.

□ 영유아 연령대별 가구 분포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필요성에 따라 영유아 연령대별로 해당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분포를 제시함

- 2012년 무상보육에서 제외되어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에 대해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3~4세 영유아 가구는 약 89만 가구로, 분석대상 영유아 가구의 약 44.1%를 차지함

구분	전체	3~4세 영유아 가구	0~4세 영유아 가구	0~2세 영유아 가구	3~5세 영유아 가구
비율	100.0	44.1	87.2	56.6	61.2
가구	2,022,390	891,756	1,762,543	1,144,548	1,237,702



주: 해당 연령 및 성별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중복으로 나타나므로 합계는 100%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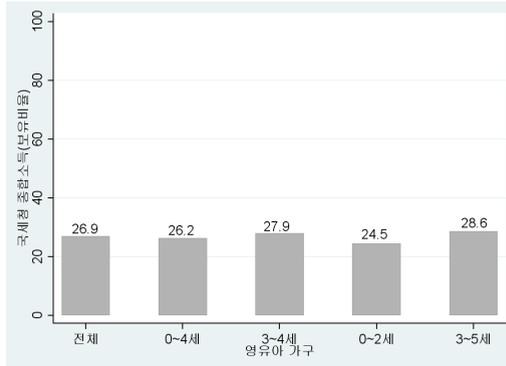
□ 영유아 연령대별 가구의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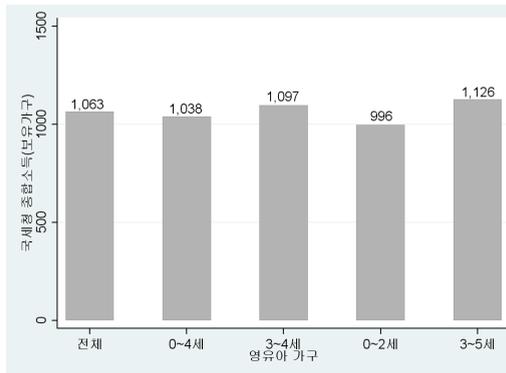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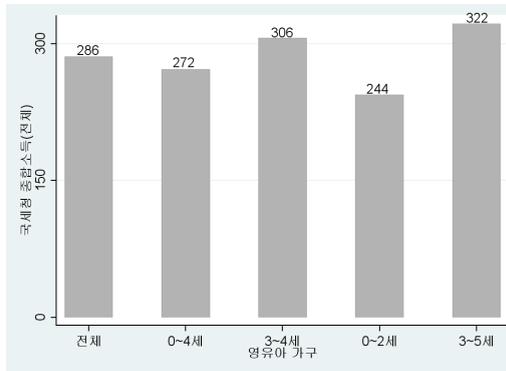
구분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 평가액
전체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86	2,651	2,937
	보유비율 (단위: %)	26.9	68.8	80.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063	3,853	3,639
0~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72	2,632	2,904
	보유비율 (단위: %)	26.2	69.2	80.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038	3,803	3,599
3~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06	2,699	3,005
	보유비율 (단위: %)	27.9	68.7	81.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097	3,929	3,710
0~2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44	2,571	2,815
	보유비율 (단위: %)	24.5	69.7	80.6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996	3,689	3,493
3~5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22	2,722	3,044
	보유비율 (단위: %)	28.6	68.4	80.9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126	3,980	3,763

－ 국세청 종합소득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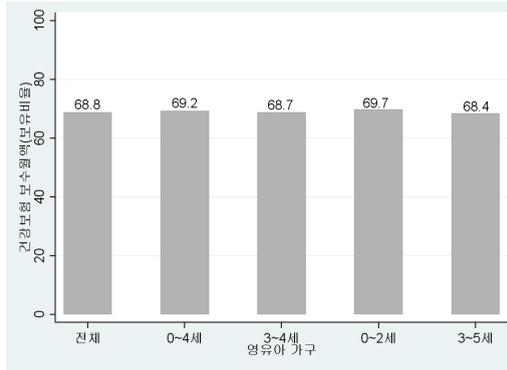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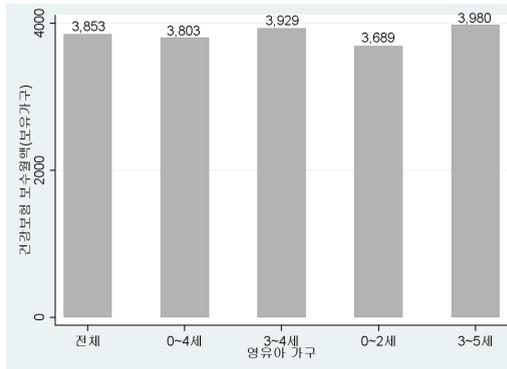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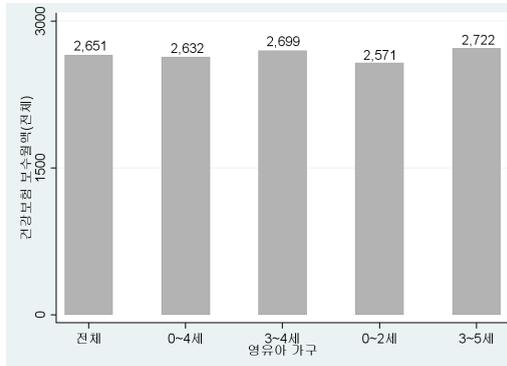


－ 건강보험보수월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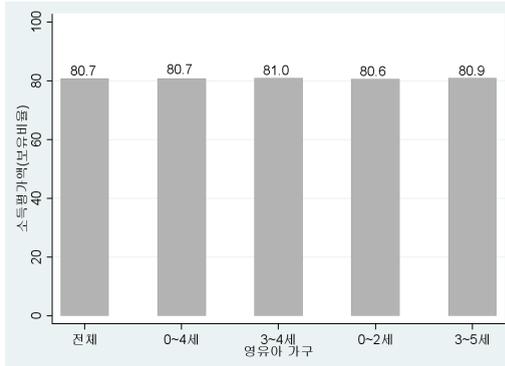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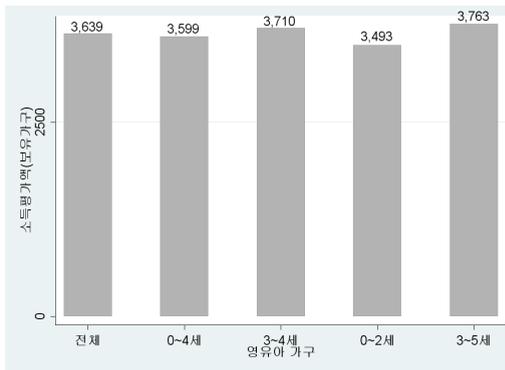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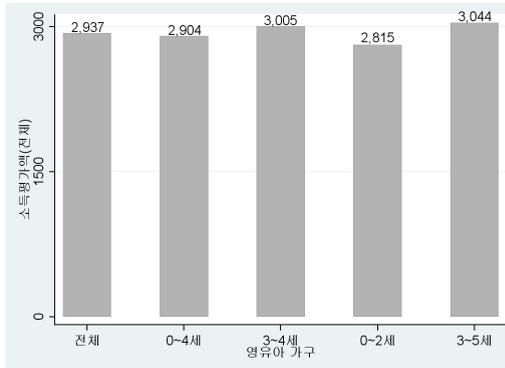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보유비율



• 평균 (전체/보유가구)



□ 영유아 연령대별 가구의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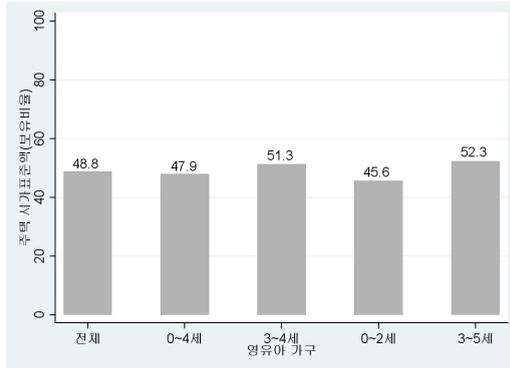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전체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9,952	18,507	4,956
	보유비율 (단위: %)	48.8	16.6	5.2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3,836	111,488	95,308
0~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7,147	17,452	4,666
	보유비율 (단위: %)	47.9	16.1	5.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1,058	108,398	93,320
3~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85,429	19,811	5,299
	보유비율 (단위: %)	51.3	17.5	5.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6,528	113,206	96,345
0~2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0,334	15,469	4,100
	보유비율 (단위: %)	45.6	14.9	4.6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4,241	103,819	89,130
3~5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88,608	21,024	5,637
	보유비율 (단위: %)	52.3	18.1	5.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9,423	116,155	98,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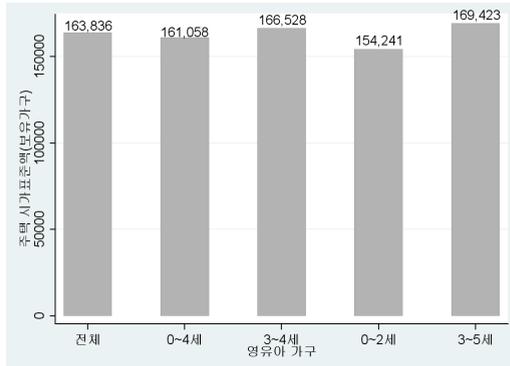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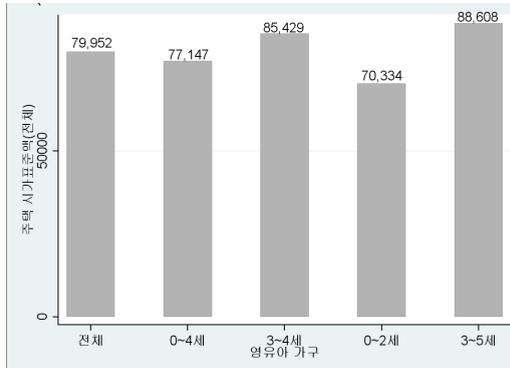
구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연 16.68%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전체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103,415	81,663	1,274
	보유비율 (단위: %)	54.7	47.6	81.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89,059	171,561	1,573
0~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99,265	77,916	1,221
	보유비율 (단위: %)	53.8	46.7	80.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84,507	166,844	1,511
3~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110,539	87,769	1,362
	보유비율 (단위: %)	57.3	50.2	82.3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92,913	174,839	1,655
0~2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89,903	69,576	1,102
	보유비율 (단위: %)	51.4	44.2	80.1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74,909	157,412	1,376
3~5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115,269	92,061	1,424
	보유비율 (단위: %)	58.3	51.2	82.4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97,717	179,807	1,728

－ 주택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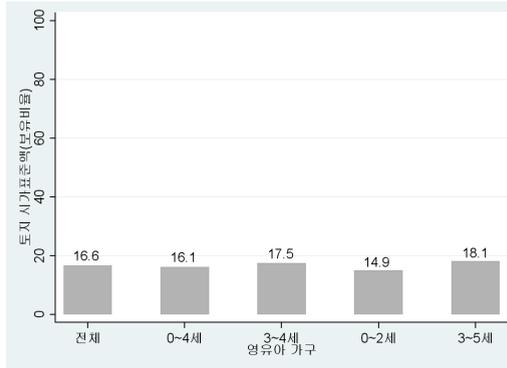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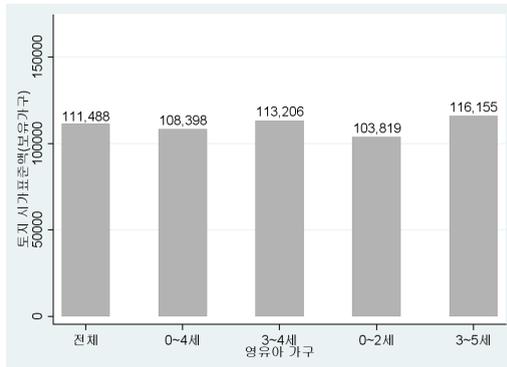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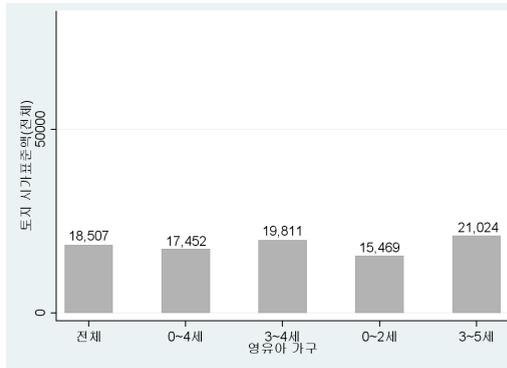


－ 토지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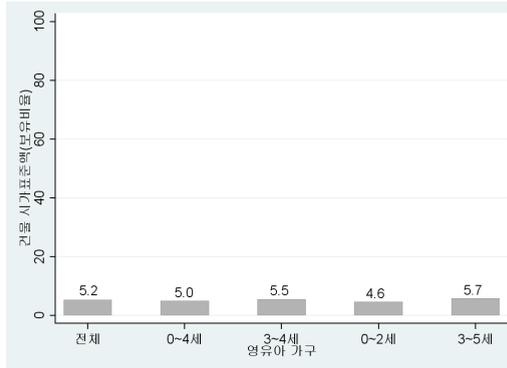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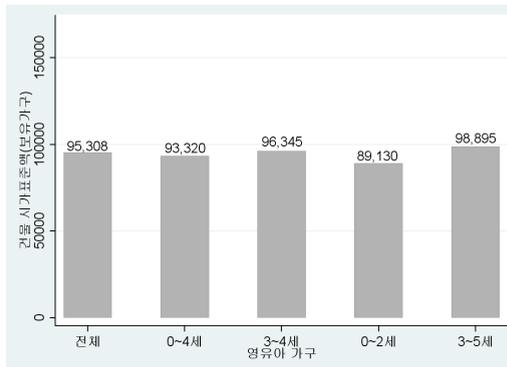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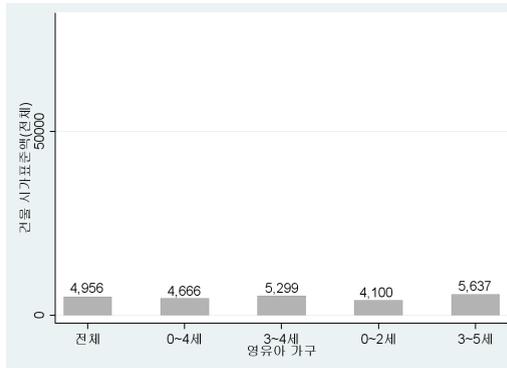


－ 건물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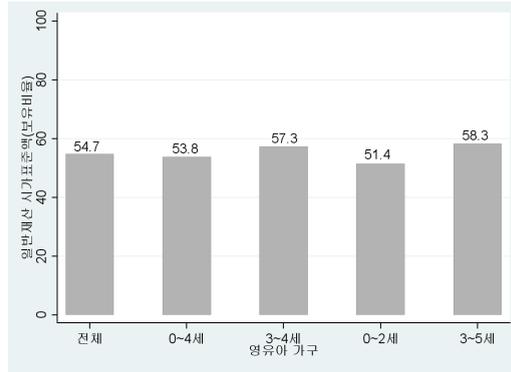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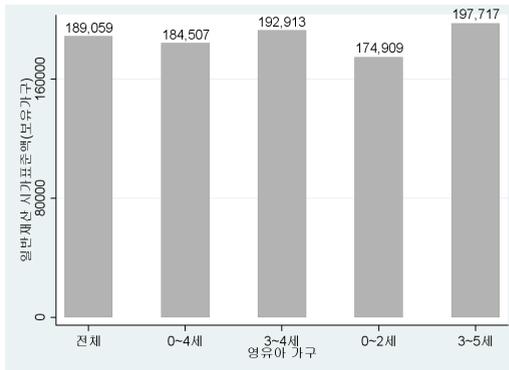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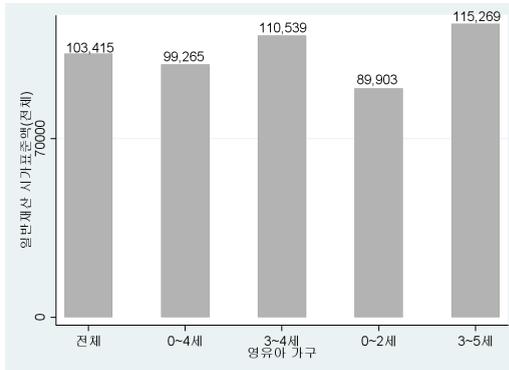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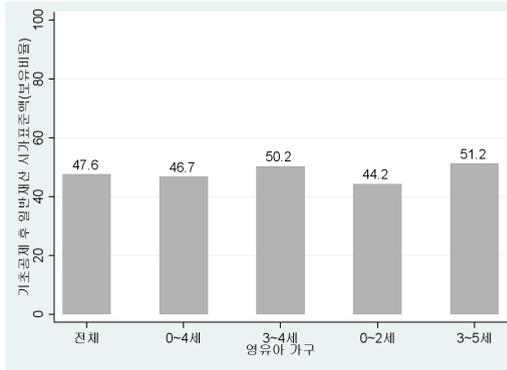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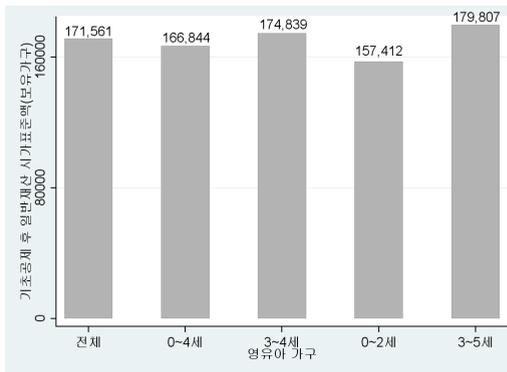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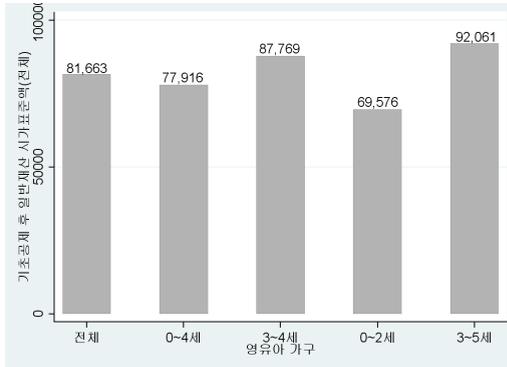


－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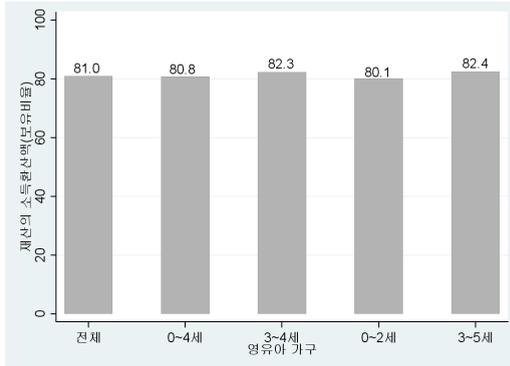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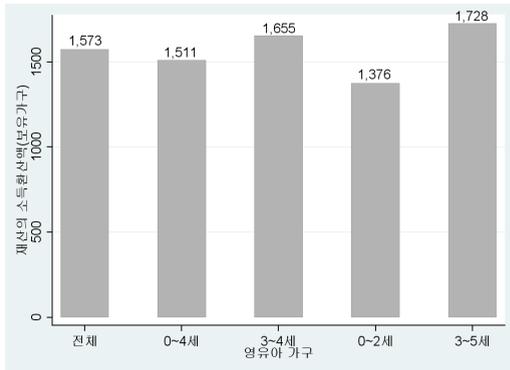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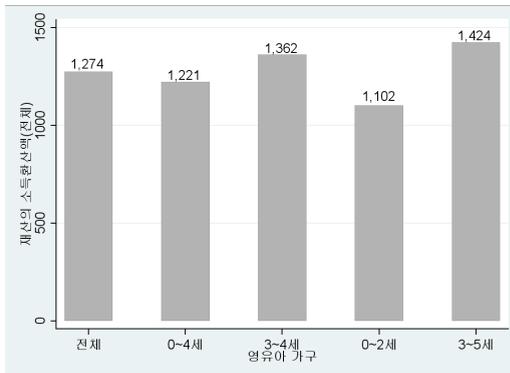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비율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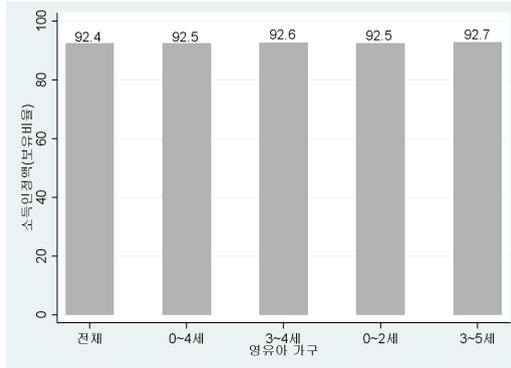
□ 영유아 연령대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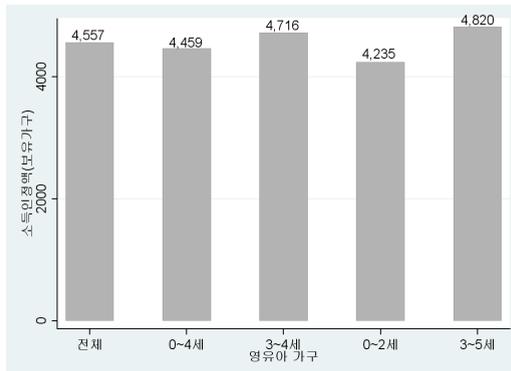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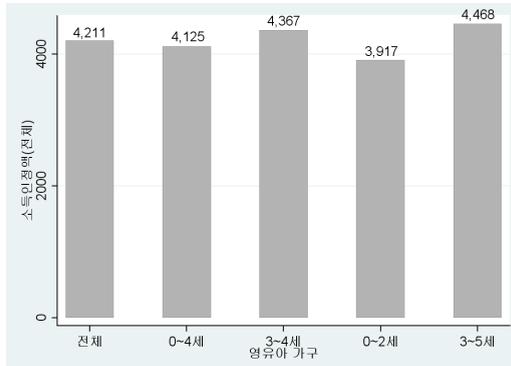
구분		소득평가액	연 16.68%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연 16.68% 기준 소득인정액
전체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937	1,274	4,211
	보유비율 (단위: %)	80.7	81	92.4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639	1,573	4,557
0~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904	1,221	4,125
	보유비율 (단위: %)	80.7	80.8	92.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599	1,511	4,459
3~4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005	1,362	4,367
	보유비율 (단위: %)	81.0	82.3	92.6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710	1,655	4,716
0~2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815	1,102	3,917
	보유비율 (단위: %)	80.6	80.1	92.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493	1,376	4,235
3~5세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044	1,424	4,468
	보유비율 (단위: %)	80.9	82.4	92.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763	1,728	4,820

－ 소득인정액

• 보유비율



• 평균 (전체/보유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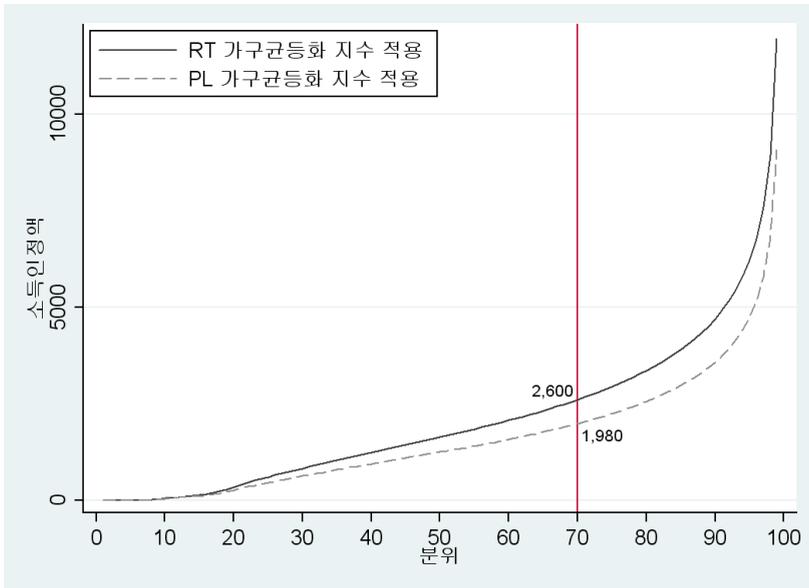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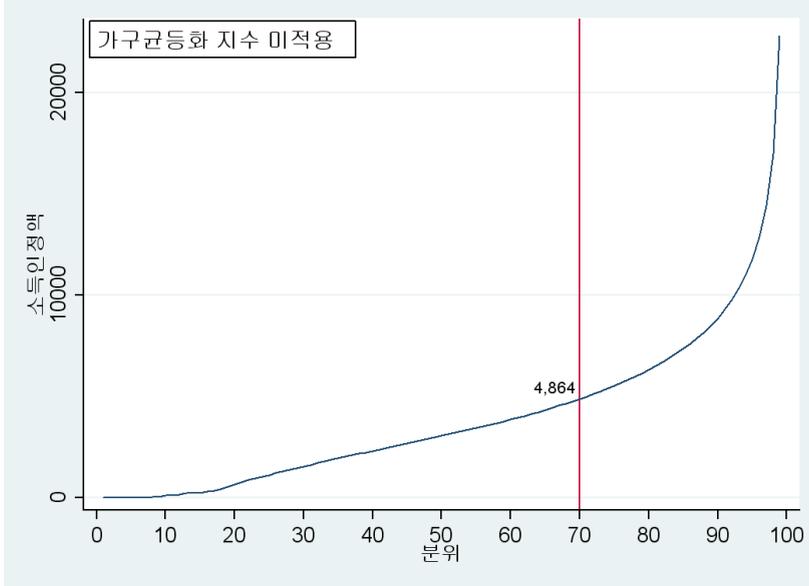


2.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 균등화지수 적용여부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연령대별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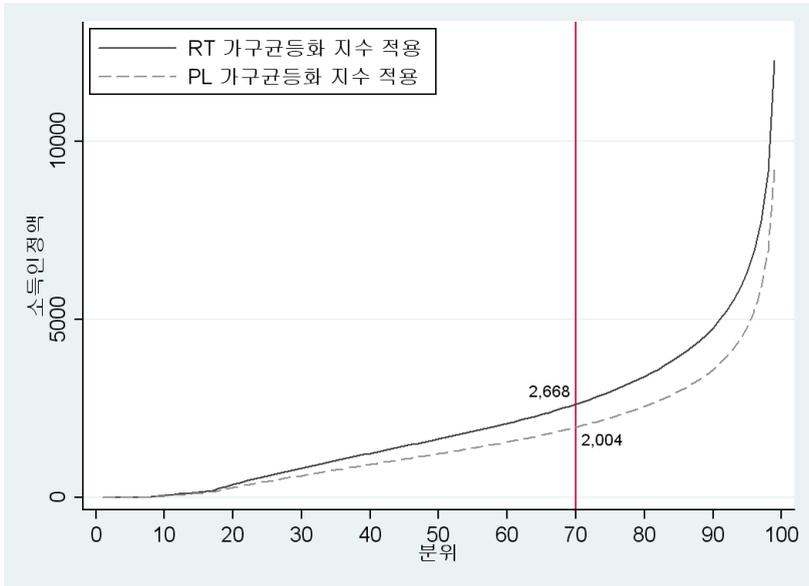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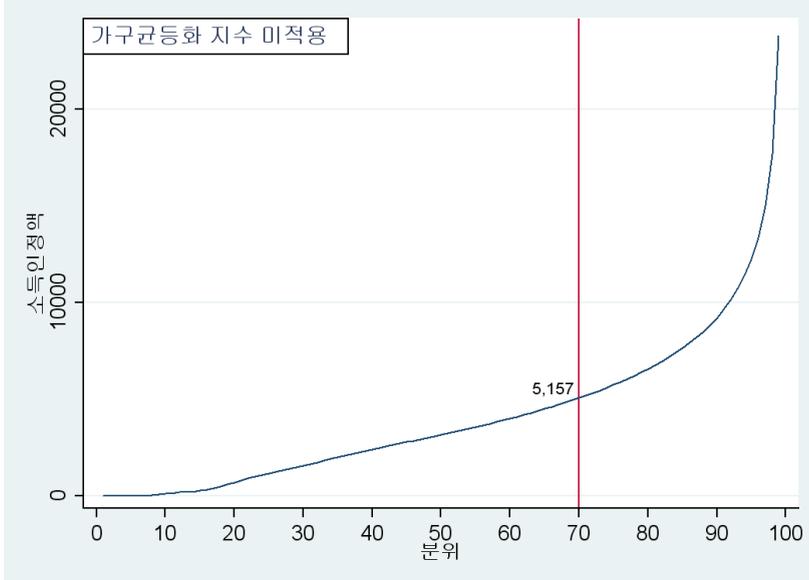
○ 전체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2,022,390	2,022,390	2,022,390
평균(천원)	4,210	2,237	1,702
중위(천원)	3,038	1,634	1,242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8,614	4,738	3,670
5%	0	0	0
10%	93	47	34
15%	229	128	97
20%	627	337	255
25%	1,109	598	453
30%	1,519	818	622
35%	1,920	1,037	784
40%	2,300	1,240	941
45%	2,671	1,437	1,091
50%	3,038	1,634	1,242
55%	3,425	1,840	1,400
60%	3,844	2,063	1,571
65%	4,316	2,312	1,762
70%	4,864	2,600	1,980
75%	5,510	2,940	2,239
80%	6,299	3,354	2,554
85%	7,334	3,893	2,965
90%	8,850	4,687	3,572
95%	11,767	6,207	4,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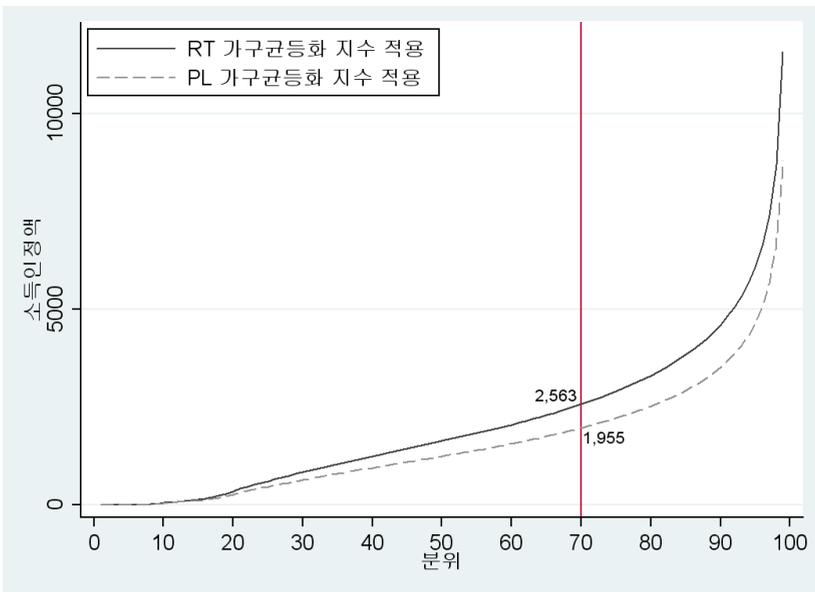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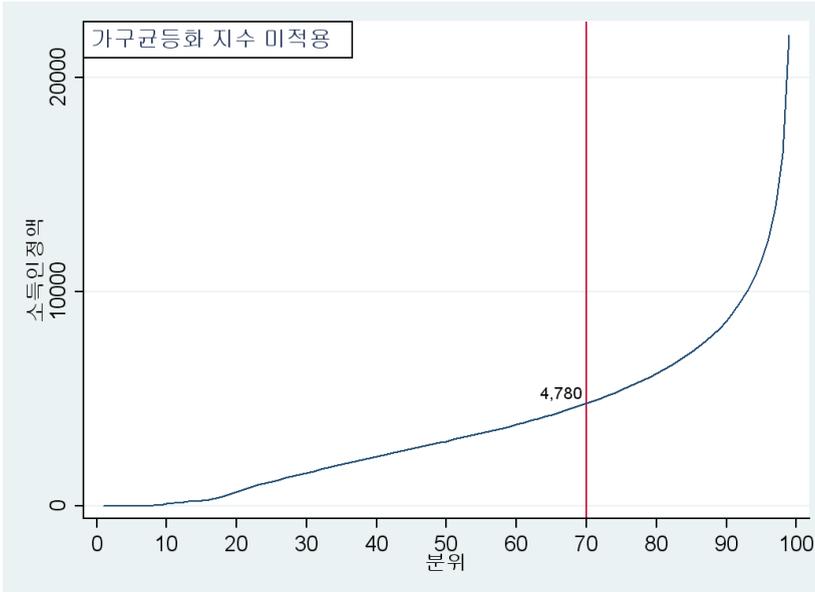
○ 3~4세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891,756	891,756	891,756
평균(천원)	4,367	2,260	1,700
중위(천원)	3,152	1,635	1,226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6,617	3,405	2,567
5%	0	0	0
10%	104	52	38
15%	252	135	101
20%	680	354	265
25%	1,139	597	445
30%	1,552	808	606
35%	1,975	1,026	768
40%	2,377	1,234	924
45%	2,765	1,435	1,074
50%	3,152	1,635	1,226
55%	3,552	1,844	1,383
60%	3,988	2,072	1,555
65%	4,483	2,327	1,748
70%	5,057	2,620	1,969
75%	5,725	2,968	2,232
80%	6,553	3,394	2,553
85%	7,635	3,953	2,975
90%	9,201	4,765	3,593
95%	12,215	6,332	4,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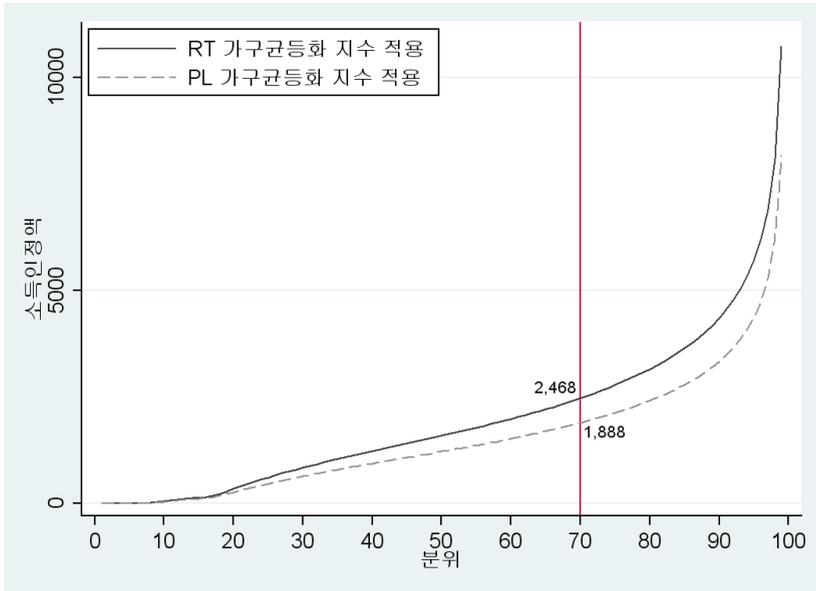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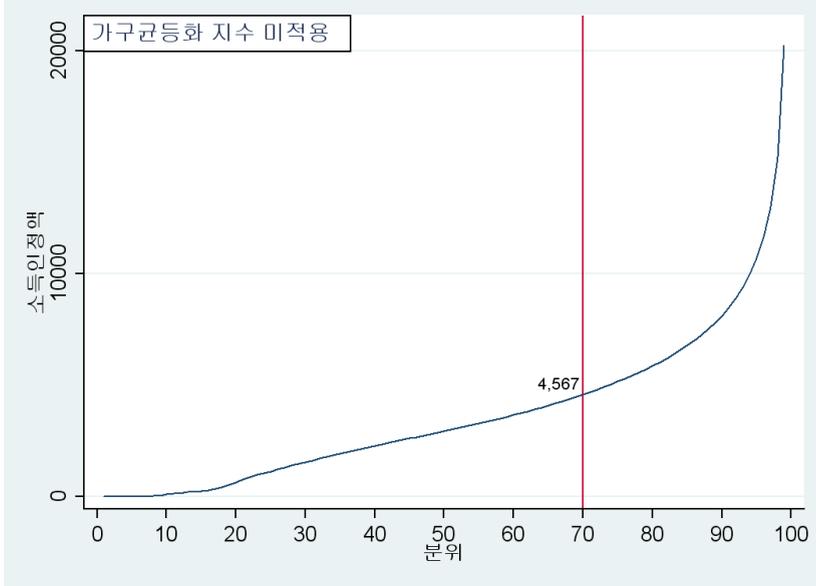
○ 0~4세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1,762,543	1,762,543	1,762,543
평균(천원)	4,125	2,199	1,675
중위(천원)	3,008	1,622	1,234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8,692	4,817	3,742
5%	0	0	0
10%	97	48	36
15%	228	128	97
20%	630	339	257
25%	1,114	600	454
30%	1,528	825	628
35%	1,922	1,039	787
40%	2,295	1,239	941
45%	2,652	1,431	1,088
50%	3,008	1,622	1,234
55%	3,383	1,823	1,389
60%	3,790	2,040	1,555
65%	4,249	2,283	1,741
70%	4,780	2,563	1,955
75%	5,405	2,894	2,207
80%	6,171	3,298	2,515
85%	7,173	3,823	2,916
90%	8,639	4,594	3,505
95%	11,463	6,066	4,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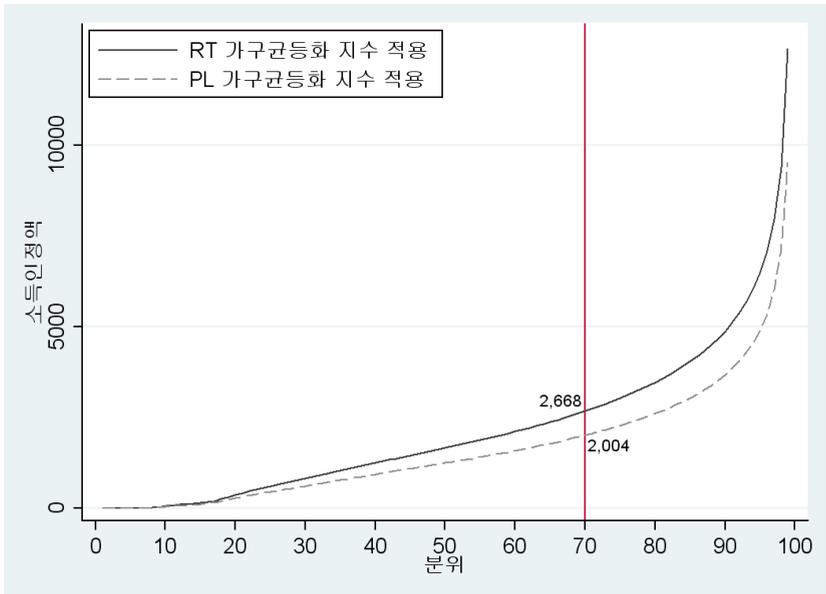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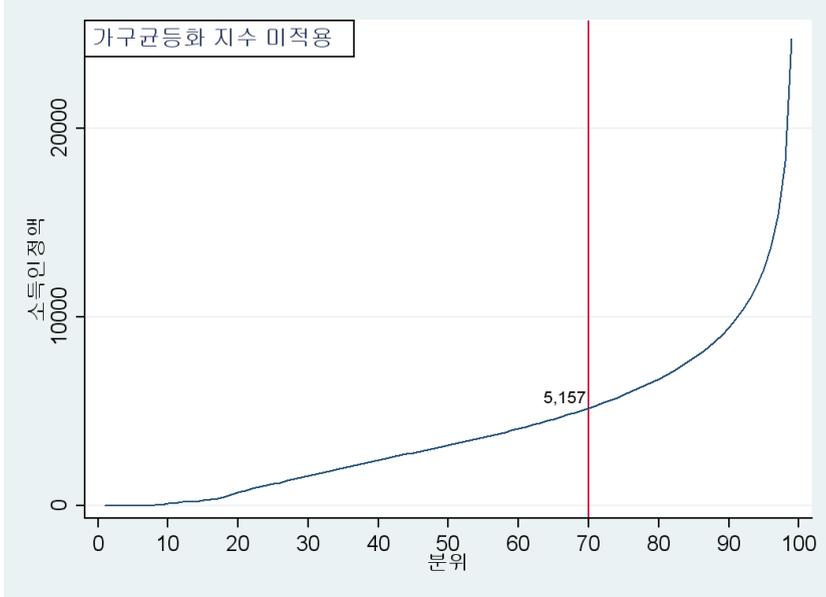
○ 0~2세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1,144,548	1,144,548	1,144,548
평균(천원)	3,916	2,103	1,607
중위(천원)	2,924	1,586	1,211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9,488	5,348	4,179
5%	0	0	0
10%	99	49	37
15%	216	123	93
20%	615	333	253
25%	1,117	603	456
30%	1,531	831	631
35%	1,909	1,038	787
40%	2,256	1,224	932
45%	2,593	1,406	1,072
50%	2,924	1,586	1,211
55%	3,272	1,775	1,356
60%	3,648	1,978	1,513
65%	4,076	2,205	1,688
70%	4,567	2,468	1,888
75%	5,147	2,777	2,124
80%	5,854	3,154	2,412
85%	6,770	3,637	2,782
90%	8,108	4,346	3,326
95%	10,689	5,705	4,367



○ 3~5세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1,237,702	1,237,702	1,237,702
평균(천원)	4,467	2,307	1,734
중위(천원)	3,194	1,654	1,238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6,964	3,575	2,692
5%	0	0	0
10%	104	52	38
15%	253	136	101
20%	675	351	263
25%	1,132	593	444
30%	1,548	807	603
35%	1,976	1,025	767
40%	2,392	1,240	926
45%	2,793	1,446	1,082
50%	3,194	1,654	1,238
55%	3,607	1,869	1,401
60%	4,057	2,104	1,579
65%	4,568	2,366	1,776
70%	5,157	2,668	2,004
75%	5,851	3,026	2,273
80%	6,703	3,463	2,602
85%	7,811	4,033	3,032
90%	9,429	4,869	3,666
95%	12,534	6,489	4,893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선정기준 모의분석 방법

- 영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분석 DB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경계 및 분포를 모의 분석함
- 정책 모의분석을 위한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자동차 연간세액 / 2)

- 2009년 개편 시 선정기준 도출과정과 일관성을 유지한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모형
 - 2009년 당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관련 주요 쟁점별 비교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추정하였음
 - 자산조사 대상인 보장단위의 경우, 2009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및 부모를 기준으로 모의 분석을 실시함
 - 기초공제액 적용여부의 경우, 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초공제액 수준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방안으로 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경우 기초공제액과 반대로 다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3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함
- 각 모형별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현행 최저생계비와 같은 PL 균등화 지수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서 반영된 OECD 기준 RT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경우를 모두 분석하였으나, 최종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시에 2009년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RT 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 모의 분석모형

- (보장단위) 영유아 및 부모 DB 기준
- (기초공제액) 현행 보육료 지원 기초공제액 적용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행 보육료 지원 환산율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의 1/3 적용
 -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의 1/3인 월 1.39%(연 16.68%)
- 가구균등화 지수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2.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방식

- 영유아 & 부모 DB 대상으로 2009년 7월 개편된 선정방식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
 - 현행 지역별 기초공제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16.68%, 월 1.39%) 적용을 통해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건강보험 DB의 특성 및 한계 내에서 사전 고려될 수 있는 공적

행정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선정기준 재조정 시 금융재산, 전월세보증금, 부채 등에 대한 보정방안 검토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재산가액 산정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및 보정률(주택 0.9, 건축물 0.9, 토지 지역별 적용률), 선박·항공기 보정계수(3.5)를 반영함

– 2009년 확대 개편 시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 바 있는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하여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도출

- RT 가구 균등화지수 (OECD 상대빈곤 분석 가구 균등화지수)

가구원수	1	2	3	4	5	6
4인 가구 기준	0.500	0.707	0.866	1.000	1.118	1.225
1인 가구 기준	1.000	1.414	1.732	2.000	2.236	2.449

- PL 가구 균등화지수 (현행 최저생계비 적용 가구 균등화지수)

가구원수	1	2	3	4	5	6
4인 가구 기준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1인 가구 기준	1.000	1.700	2.200	2.700	3.200	3.700

– 영유아 & 부모 기준 DB를 기초로 2009년 7월 개편된 선정방식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

- 다양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검토하여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 당시 적용된 OECD 가구균등화 지수(RT)에 의하여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

- 균등화지수에 의하여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안을 우선 도출한 후, 이를 가구규모별 보육료 선정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

□ 보육료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경과

－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계획 변경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 모의분석을 수행함

－ (1차 분석)

- 국회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만 5세 영유아 가구에 한해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서 만 5세 영유아 가구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 이에 따라, 만 5세 영유아 가구를 제외한 만 0~4세 영유아가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이후와 동일하게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로 유지하며, 2011년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520만원(4인 가구)을 도출하여 적용할 예정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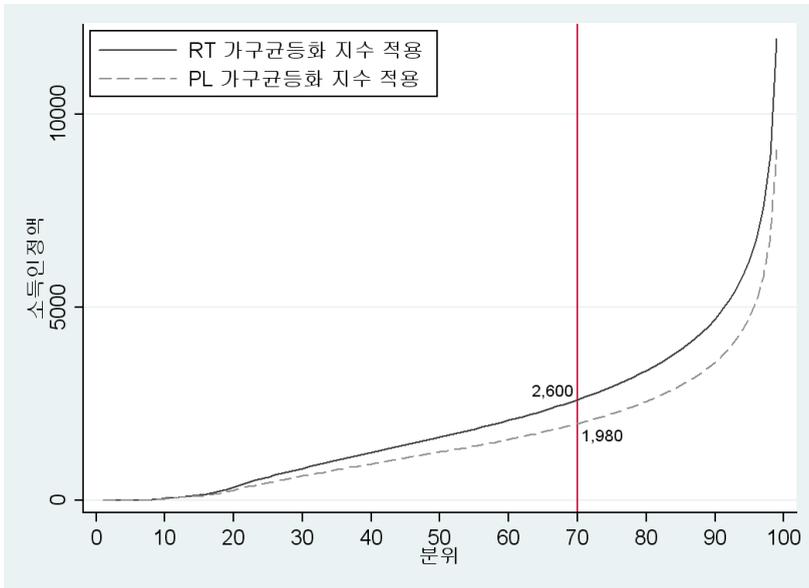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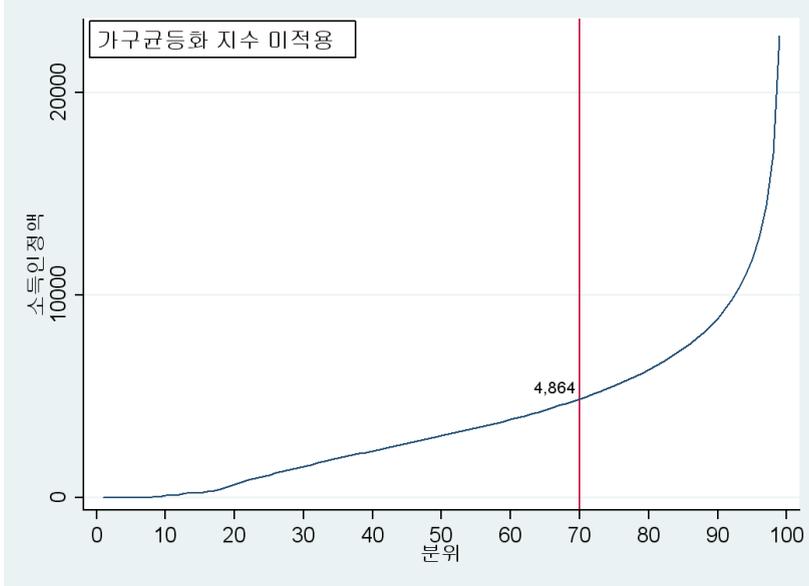
－ (2차 분석)

-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만 5세 영유아 가구뿐만 아니라 만 0~2세 영유아 가구에게도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후 속조치 일환으로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만 0~2세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가구를 제외한 만 3~4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이후와 동일하게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적용하며, 2011년과 달리 3~4세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재분석하여 524만원(4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도출함

3.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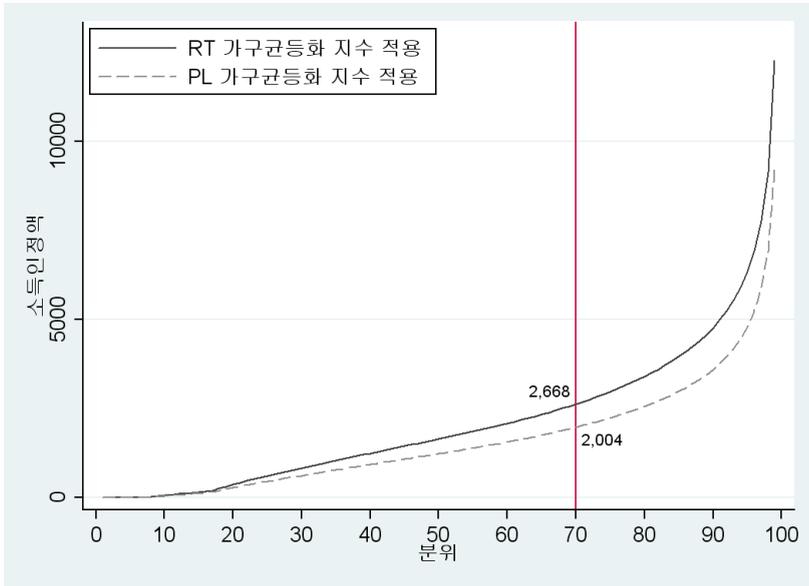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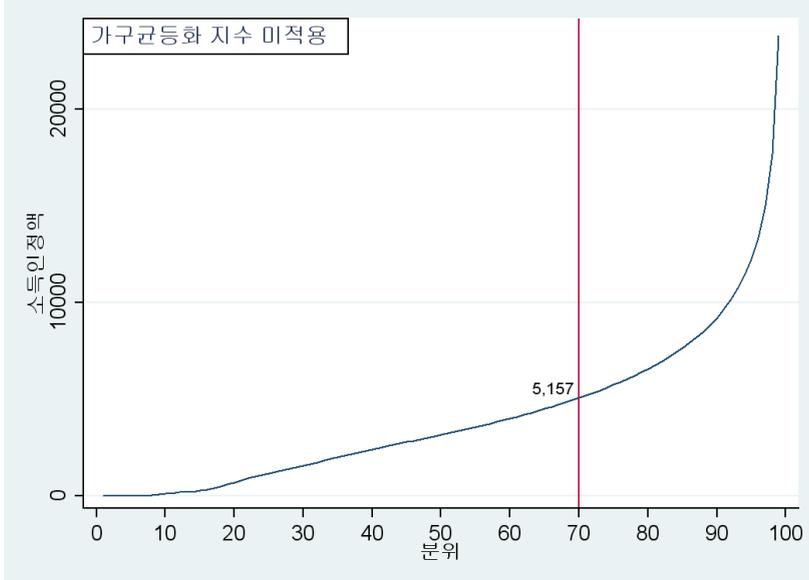
□ (1차 분석) 전체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2,022,390	2,022,390	2,022,390
평균(천원)	4,210	2,237	1,702
중위(천원)	3,038	1,634	1,242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8,614	4,738	3,670
5%	0	0	0
10%	93	47	34
15%	229	128	97
20%	627	337	255
25%	1,109	598	453
30%	1,519	818	622
35%	1,920	1,037	784
40%	2,300	1,240	941
45%	2,671	1,437	1,091
50%	3,038	1,634	1,242
55%	3,425	1,840	1,400
60%	3,844	2,063	1,571
65%	4,316	2,312	1,762
70%	4,864	2,600	1,980
75%	5,510	2,940	2,239
80%	6,299	3,354	2,554
85%	7,334	3,893	2,965
90%	8,850	4,687	3,572
95%	11,767	6,207	4,729



□ (2차 분석) 3~4세 영유아가구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891,756	891,756	891,756
평균(천원)	4,367	2,260	1,700
중위(천원)	3,152	1,635	1,226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6,617	3,405	2,567
5%	0	0	0
10%	104	52	38
15%	252	135	101
20%	680	354	265
25%	1,139	597	445
30%	1,552	808	606
35%	1,975	1,026	768
40%	2,377	1,234	924
45%	2,765	1,435	1,074
50%	3,152	1,635	1,226
55%	3,552	1,844	1,383
60%	3,988	2,072	1,555
65%	4,483	2,327	1,748
70%	5,057	2,620	1,969
75%	5,725	2,968	2,232
80%	6,553	3,394	2,553
85%	7,635	3,953	2,975
90%	9,201	4,765	3,593
95%	12,215	6,332	4,782



□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최종 분석결과

- RT 가구균등화 지수,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기초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 시 영유아 가구 분위별 소득인정액 분포
 - 만 5세 누리과정 실시 및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의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3~4세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제시

분위별 소득인정액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4인 가구)
하위 10%	104,000
하위 20%	708,000
하위 30%	1,616,000
하위 40%	2,468,000
하위 50%	3,270,000
하위 60%	4,144,000
하위 70%	5,240,000
하위 80%	6,788,000
하위 90%	9,530,000

- 2012년 가구규모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최종 조정안

선정기준 조정안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537,840	5,240,000	5,858,320	6,416,380

4. 2009년 7월 개편 이후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추이

□ 2009년 7월 ~ 2010년 선정기준

- 분석대상 : 전체 영유아 가구
- 보장단위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 RT 가구균등화 지수
- 일반재산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비율	2009년 선정기준(안) (단위: 만원)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	전액 (100%)	224	258	289	316
2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60%	부분 (60%)	294	339	379	415
3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60~70%	부분 (30%)	378	436	488	534

□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 분석대상 : 전체 영유아 가구
- 보장단위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 RT 가구균등화 지수
- 일반재산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선정기준 구분	지원비율	2011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11년 3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16	480	537	588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0~2세 무상보육 확대 전)

- 분석대상 : 전체 영유아 가구
- 보장단위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 RT 가구균등화 지수
- 일반재산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국회예산안 처리 전 (잠정 조정안)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만 5세		전액 (100%)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만 0~4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50	520	581	637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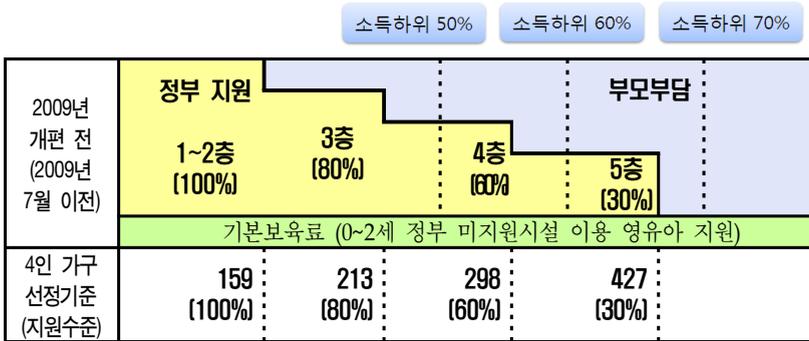
□ 2012년 선정기준 최종 조정방안 (0~2세 무상보육 확대 후)

- 분석대상 : 무상보육 대상을 제외한 3~4세 영유아 가구
- 보장단위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 RT 가구균등화 지수
- 일반재산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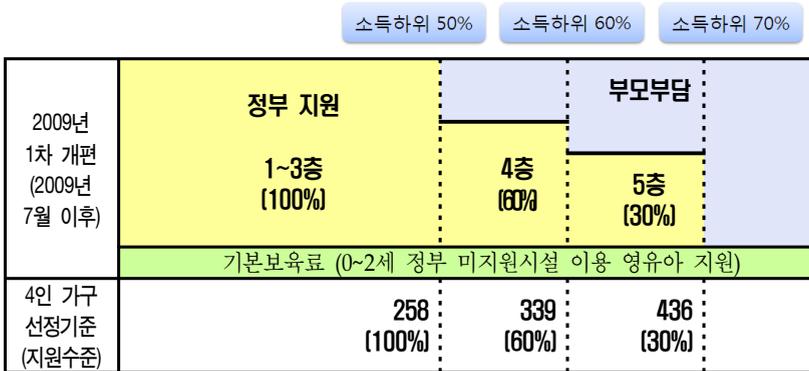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12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국회예산안 처리 후 (2012년 3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만 0~2세 / 만 5세		전액 (100%)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및 만 0~2세까지 무상보육 확대 실시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만 3~4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54	524	586	642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에 따른 지원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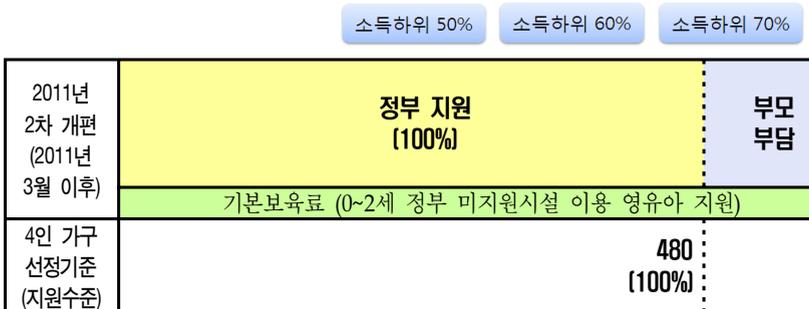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2009년 7월 이전)



－ 2009년 7월(1차 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 2011년 3월(2차 개편)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개편



— 2012년 3차 개편(안): 국회예산안 처리 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만 5세	2012년 3차개편안 (국회예산안 처리 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 (100%)	
		만 0~4세 영유아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 지원 (100%)	부모 부담
만 0~4세	2012년 3차개편안 (국회예산안 처리 전)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5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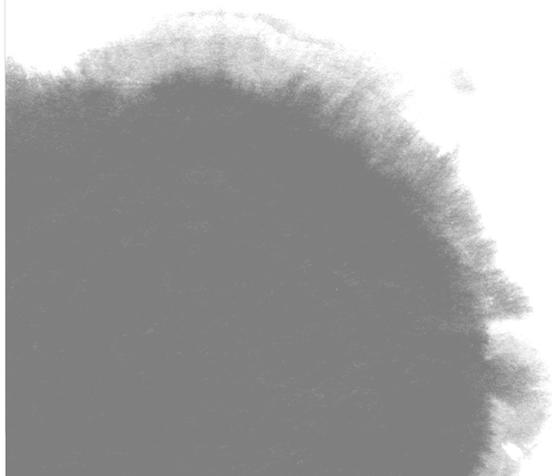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 2012년 3월(3차 개편): 국회예산안 처리 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만 5세 만 0~2세	2012년 3차개편 (국회예산안 처리 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만 0~2세 영유아가구 전체로 무상보육 확대 정부 지원 (100%)	
		만 3~4세 영유아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 지원 (100%)	부모 부담
만 3~4세	2012년 3차개편 (국회예산안 처리 후)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524 (100%)

5장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제5장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 여기서는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과정에서의 한계, 지역 및 경제활동유형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반영하여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 예정인 양육수당 선정체계 개선 필요사항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함

1.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기준 조정방안 보완

- 2009년 7월 선정체계 개편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의 한계점
- 2009년 7월 개편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했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 이에 따라, 2009년 확대 개편을 위한 선정기준 도출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과정에서도 선정방식 개편사항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DB로부터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사전에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 DB로 구축 가능한 소득 및 재산항목을 중심으로 구축되므로, 실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은 분석 DB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일부 공적 이전소득(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등)과 보육료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조회가 이루어지는 금융재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금융부채 등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 2013년 양육수당 선정기준 조정방안 보완 필요사항

- 이와 같은 한계를 반영하여 향후 양육수당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시 모의분석을 위한 분석 DB에 원천적으로 구축될 수 없는 누락 항목(금융재산, 부채, 전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보정여부와 보정방법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도출된 선정기준을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기준 조정안을 확정해야 함
 - 전체 영유아 가구의 금융재산 및 부채 등 누락 항목에 대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보정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청 가계자산조사과 가계동향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것은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적 행정자료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 반면에, 2010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 계층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누락 항목의 평균값 등을 산출하여 이를 선정기준 조정안에 반영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보정방법으로는 전체 영유아 가구의 평균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일부 계층(소득인정액 하위 60~70% 또는 70% 전후의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을 산출하여 보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지역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공제액 수준 조정 검토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작용되고 있는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보편적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제액 수준은 여타 제도의 절반 수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보육료 지원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공제액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보육료 지원 일반재산 환산율 : 연 16.68%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일반재산 환산율 : 연 5%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공제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절대적 수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도시,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수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률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유아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영유아 가구 중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 가구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 대한 불만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자와 자

영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등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되는 등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확대 예정인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체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2013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 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3.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형평성 제고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당시,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지자체의 자산조사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실사 중심에서 공적 행정자료 우선 활용 원칙으로 전환함

- 이러한 변화는 공적 행정자료 연계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축되어 201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인해 가능하였음

□ 그러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인해 복지대상 선정, 급여생성 및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산조사 등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공적 행정자료 중 시차 문제 등 일부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선정과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적 공공부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적 수준으로 확대된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의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정에 있어 근로소득

자와 자영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공적 행정자료 우선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자영사업자의 사업소득 파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공적 행정자료 적용 시, 상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보수월액 자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향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보 연계가 확대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 또는 국세청 자료가 반영될 것임

— 반면, 자영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되고 있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활용되는데,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소득파악률 차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총 급여액 또는 건강보험보수월액 개념과 국세청 사업소득금액의 개념 및 수준 차이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자영사업자에 비해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는 향후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정책, 특히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제도의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조세체계에서 제기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소득파악(유리지갑) 및 자산조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선정체계와 관련된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2013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체계에서 국세청 소득자료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또는 폐지 검토

□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 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금융 재산 및 금융부채 조회 실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와 함께,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재산유형 분류기준 완화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중 대표적인 내용임

- 기존에 2,000cc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그 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 왔던 사안으로, 이를 2,500cc로 개선하는 등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2009년 개편 이후 자동차에 대한 재산유형 구분

일반재산 (월 4.17% / 3)	승용차(월 100%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 차량 6년 초과 모든 차량 -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0cc이상 차량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와 환산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적용과정에서 여전히 자동차 배기량 기준 (2,500cc)에 대한 민원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SUV 등 일반적으로 많이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배기량이 2,500cc를 다소 초과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임
- 현행 선정방식에 따르면, 고가의 외국산 자동차일지라도 배기량이 2,500cc 이하일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

산율(월 4.17% / 3)이 적용되지만, 차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기량이 2,500cc를 다소 초과하는 국산 자동차의 경우 거의 25배 높은 수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임

- 배기량은 낮을지라도 외국산 자동차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2013년 양육수당 선정체계 개편 및 선정기준 도출 과정에,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폐지 한 후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재산과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 최현수 외(2009),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최현수 외(2010),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심층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최현수 외(2011),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Anthony B. Atkinson, Lee Rainwater, Timothy M. Smeeding, 1996,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 Jean-Marc Burniaux, Michael F. Foster, Howard Oxley 외, 199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189, OECD.
- Michael F. Foster,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42, OECD.
- European Commission(2009),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ntries”.
- Eurostat Education Database(2010)
- OECD Family database(2010)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10)
- OECD Education Database(2010)